

# Deloitte.



2025.06 | 제10호

## 기업지배기구 *Insights*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I. 전문가 기고

- ① AI 기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혁신: 감사위원회의 진화 • 4  
- 김학범 한국 딜로이트 그룹 Strategy, Risk & Transactions 부문 파트너
- ② 주주제안권의 제도적 취지와 요건 • 11  
-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I. CCG 아젠다

- ①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 15
- ② 2024 회계연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시사점 • 21

## III. 데이터 포인트

- ①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 32

## IV. 주요 규제 동향

-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 49
- ②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54
- ③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58

## V. FAQ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 • 65
- ②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 69

## VI. 주요행사

- ①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오픈 • 71
- ② 2025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회계학회 공동 세미나 성료 • 72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I. 전문가 기고 ①

## AI 기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혁신: 감사위원회의 진화

김학범 한국 딜로이트 그룹 Strategy, Risk & Transactions 부문 파트너

### I. 서론

오늘날 기업의 의사결정 환경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복잡성과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운영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기업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략 수립부터 리스크 대응, 내부통제까지 조직은 훨씬 더 빠른 판단과 정밀한 통제를 요구받고 있다. **감사위원회 역시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의 한가운데서 더 이상 보고받고 점검하는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직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통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 축으로 감사위원회가 기능해야 할 때다.

전통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보고서나 경영진의 자료에 기반해 판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비정형 데이터의 급증과 디지털 리스크의 다양화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기치 않은 사이버 위협, ESG 관련 리스크, AI 오용 등 복잡한 이슈들은 더 이상 정형화된 감사 절차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이상 거래나 내부통제 실패를 사후적으로 인지하는 접근은 조직의 평판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감사위원회가 AI를 활용하면 단순한 정보 수신자에서 벗어나 직접 데이터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찰 제공자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기업이 AI를 리스크 탐지, 내부통제 강화, 컴플라이언스 점검,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열리고 있다. 예를 들어, **향후에는 감사위원회가 AI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예측 정보를 직접 받아보며, 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도 충분히 상상해볼 수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방대한 데이터를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의심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변화의 흐름을 읽으며, 리스크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역량 주체로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I는 감사위원회의 기존 역할을 보완하는 도구이자 기회다. **감사위원회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통제 수준과 대응 역량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 감사위원회는 곧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복잡해지는 경영환경과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감사위원회는 이제 AI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업무에 통합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춰야 할 시점에 와 있다.

## I. 전문가기고 ①

## AI 기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혁신: 감사위원회의 진화

## II. 감사·내부통제 분야의 AI 도입 현황

AI 기술은 이제 감사와 내부통제 분야에서도 더 이상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요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는 리스크 탐지, 내부감사 자동화, 규정 준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 사람이 전수조사나 표본 추출을 통해 수행하던 감사 업무도, 이제는 AI를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핵심 이슈만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최고감사기구(INTOSAI)는 “AI는 감사인의 사고방식 자체를 전환시키는 기술”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래 감사의 핵심 수단으로 AI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상거래 탐지, 문서 자동 분류, 감사계획 수립 자동화 등에서 AI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이 ‘감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도구’임을 강조한다.

미국 감사원(GAO)도 마찬가지다. GAO는 최근 공식 보고를 통해,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감사 절차를 자동화하고, 부정 의심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며, 전문 감사인의 판단을 데이터 기반으로 보완하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AI를 활용한 사전 리스크 분석 기능을 통해 감사의 방향성과 범위를 조정하는 ‘예측적 감사(predictive audit)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표준 프로세스로 정립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내부 정보시스템과 외부 데이터를 연계해, 반복적인 감사 업무를 AI로 자동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수작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사 범위를 더욱 넓히는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해, 자산 건전성과 운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거래 패턴, 결재 이력, 문서 로그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감사에서 실시간 감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AI는 감사의 실행 방식은 물론, 범위, 속도, 정밀도까지 전방위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다. 기존 감사 시스템이 정형화된 데이터에만 의존했다면, AI는 이메일, 계약서, ERP 로그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이는 감사와 내부통제의 영역 자체를 구조적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III. AI 시대, 감사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이렇듯 AI 기술의 확산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기능 또한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위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구로 기능해왔다. 재무보고의 신뢰성 검토,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점검,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은 그 주요 역할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정보 비대칭의 심화는 기존의 점검 중심 역할만으로는 조직의 거버넌스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내부의 실시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경영진이나 외부 감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려왔다. 리스크 검토 역시 과거 발생한 사례에 대한 후속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기술 변화나 정보보안, ESG와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로 인해 감사의 범위와 정밀도 모두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제 감사위원회는 단순한 결과 검토나 사후 확인에 머물지 않고, 조직 전반의 리스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진화해야 한다. AI는 이러한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조직 내 거래 흐름, 시스템 로그,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원회가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기존의 감사 체계가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분석하는 방식이었다면, AI는 반복적 이상 패턴, 권한 남용, 데이터 왜곡 등 실시간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해 대응 기회를 앞당긴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단순한 감독자가 아닌, 조직의 위험 변화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 자리할 수 있다.

AI는 단순히 자동화된 기술이 아니라, 감사 거버넌스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술의 기본 작동 원리와 데이터 해석 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내부감사팀, IT 부서, 외부 감사인 등 조직 내 주요 기능과 수평적인 협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부 기반 위에서야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판단력과 조직 통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결국, AI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감사위원회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기술의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것을 조직의 전략적 판단에 통합하는 역량과 책임 있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 IV. 감사위원회의 AI 활용 방향

앞서 언급한 역할 전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행 영역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AI는 단지 내부감사팀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감사보고서의 요약 및 핵심 이슈 시각화**는 감사위원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방대한 감사 결과물 속에서 중요 쟁점을 구조화해 보여주는 기능은, 위원회가 제한된 시간 내에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감사계획 수립에도 AI는 유용하게 작용한다.** 감사 결과, 위험 지표, 자원 배분 등을 종합 분석해 감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내부감사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방향성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AI는 ESG, 정보보안, 내부통제 등 다양한 전략 리스크에 대해 조직 전반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단순히 컴플라이언스 항목을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중장기 전략 및 리스크 관리체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징후 탐지는 감사 실무 측면에서는 내부감사팀에 적합하지만, 감사위원회 역시 AI 분석 결과를 통해 사전 경보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AI가 제시하는 비정상 징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특정 영역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기술적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다양한 기능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는 더 이상 결과만 받아보는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분석 방향을 제시하고 활용 기준을 함께 설정하는 실질적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한다.



## V.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AI 활용을 위한 준비

실제 조직 내에서 AI의 성과와 효용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기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핵심은 감사위원회 구성원 스스로가 기술적 변화를 읽고, 이를 자신의 역할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감사위원회가 AI의 작동 원리나 데이터 흐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기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가 감지되고, 어떤 기준으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도는 필요하다. 그래야 내부감사팀이나 IT부서와 실질적인 논의와 공동 판단이 가능해진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술을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해석자이자 판단 주체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단지 기술의 수용 차원이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거버넌스 조직으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AI는 때로 판단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중요한 이상징후를 놓치거나,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과도하게 리스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는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하는 사고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 역할은 AI를 활용하는 사람으로서의 통찰력과 책임감 위에서 있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시각에 맞는 정보 제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정밀하더라도,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거나 실무적인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될 경우,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핵심 리스크 요약, 변화 추이, 비교 분석 등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기술은 진정한 보조 도구로 작용한다.

AI는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준비와 역량에 달려 있다. 조직 내 다양한 기술 시스템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지금, 감사위원회가 이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대신, 스스로 기술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갖춘 주체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거버넌스 강화의 시작점이 된다.

## VI. 감사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의 준비 조건

AI를 감사위원회의 통제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보다 사람과 조직의 준비 상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실행 기반이 먼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몇 가지 핵심적인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다. AI는 단독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내부감사팀, IT 부서, 외부 감사인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더라도, 리스크 분석과 대응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컨대 AI가 탐지한 이상징후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내부감사팀이 담당하고, 시스템 유지보수나 분석 모델 튜닝은 IT 부서가 맡으며, 감사위원회는 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감독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부서 간 협의체 구성, 정보 공유 절차, 역할 분담 기준 등을 함께 설계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기술적 판단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가이드 마련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AI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분석 결과의 맥락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소양은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사내 교육, 기술 활용 가이드북 제공, 외부 세미나 참여 등 제도적인 학습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 특히 **분석 결과가 왜 그런 판단에 도달했는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반론이나 추가 검토를 제기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감사위원회가 AI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접근권한과 정보 제공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 분석 결과만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방식은 AI의 진정한 효용을 제한한다. 위원회가 실시간 리스크 지표나 주요 이상징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로 어떤 방식의 판단을 내렸는지 기본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너무 기술적인 구조 설명이 아니라, 판단 기준, 민감도 설정, 주요 탐지 항목 등 실무적으로 해석 가능한 수준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감사위원회가 AI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정보 제공자이자 실행 기반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경영진은 단지 예산을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협력 요청을 단편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조직 전체의 거버넌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동 과제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VII. 변화의 중심에 선 감사위원회를 위하여

AI는 이제 실험적 기술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 업무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규정 준수, 리스크 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 폭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변화는 이미 조직 안으로 들어왔다. 감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처럼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거나,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해석하는 접근만으로는 다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따라잡기 어렵다. 감사위원회는 단순한 검토 기능을 넘어, 핵심 이슈를 짚어내고 변화에 앞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야 한다.

AI는 그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긴 하지만, 방향을 설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역할은 기술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감사위원회는 AI가 보여주는 수치와 경고에 반응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지, 무엇을 조직의 핵심 리스크로 간주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조직의 거버넌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술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이 감사위원회의 판단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가 변화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먼저 조직 내 핵심 거버넌스 주체들과의 협업 체계를 주도하고, 실행 환경을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은 고립된 상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의미 있는 변화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하고, 필요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실무 감각과 책임 의식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 모든 기반 위에서, 기술을 그 자체로 목표화하지 않고, 조직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고 어떤 실행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뒤따라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제 단순히 절차를 감독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중요한 흐름을 읽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대응의 방향을 조직에 제시할 수 있는 핵심 판단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조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는, 결국 어떻게 활용되며, 누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AI는 분명 통제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지만, 그 효과는 감사위원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의 앞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I. 전문가 기고 ②

## 주주제안권의 제도적 취지와 요건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며

법무법인 율촌 발행 2025년 정기주주총회 리뷰에 따르면 이번 시즌은 밸류업 공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주주총회로서 전례 없는 소액주주 활동이 주주제안의 증가 형태로 두드러졌다고 한다(아래 법무법인 율촌 제공 자료 참조).

<표 1> 최근 3년 간 정기주주총회에 부의된 주주제안 유형<sup>1)</sup>

구분	2023	2024	2025
3월 정기주총 주주제안 상정회사	43	34	41
3월 정기주총 주주제안 안건 수	146	115	217
주주환원(배당, 자기주식 소각 등)	39	21	24
정관변경	24	20	42
이사 및 감사, 감사위원 선임	74	63	134
임원보수	7	7	3
기타	2	4	14

주주제안권은 1997년 개정 구증권거래법(2009년 2월 폐지)과 1998년 개정상법에서 회사와 주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주의 총회 참가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소액주주가 자기의 의사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소액주주의 대주주 또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한지 20년이 지나도록 행동주의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행사되었을 뿐이고 그 활용도도 이사선임이나 배당요구 사항에 한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정관 변경과 이사 및 감사, 감사위원 선임으로 확대되었다. 위 법무법인 율촌 리뷰에 따르면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주주제안이 상정된 41개 사 중 12개 기업에서 1건 이상의 주주제안이 가결되었다고 한다.

1) 법무법인 율촌 제공 자료 참조, 주주총회소집결의가 최초로 공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주주총회 개최 전 안건철회 등으로 실제 주주총회에 부의된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I. 전문가기고 ②

## 주주제안권의 제도적 취지와 요건

<표 2> 주주제안유형 별 가결사례<sup>2)</sup>

안건유형	주주제안 가결기업
주주환원(배당, 자기주식 소각 등)	-
정관변경	강남제비스코(액면분할), 오스코텍(집중투표제), 디아이동일(전자투표제 도입)
이사 및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아미코젠, 오스코텍, 디아이동일, 고려아연, 유엑스엔, 콜마홀딩스, 티플렉스, 에이치피오, 와이엠티
임원보수	-
기타	인포바인, 고려제강

이하에서는 주주제안권의 취지와 요건을 살핍으로써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제도적 취지

주주제안권은 일반주주들의 회사경영 참여 유도를 통해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고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화를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경영진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으므로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주제안권의 행사는 반드시 제안을 가결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주주의 의견을 경영진이나 다른 주주에게 전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법 제363조의2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주제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삼을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의제제안'이라고 하고,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요령을 제안하는 것을 '의안제안'이라 하는데, 의안제안은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들이 제안한 내용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최근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투자한 회사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액주주간 의사소통, 결집 및 단체행동까지 가능한 세상이 왔다. 주주제안은 경영권침해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대원칙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기능으로 경영의 투명성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법무법인 율촌 제공 자료 참조

### III. 행사요건

주주제안의 행사주체요건을 살펴보면, 비상장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규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기간 보유조건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주제안의 행사기간을 살펴보면, 제안권자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현행 주주제안에 대한 사전심사권은 이사회에 전속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의 기관 권한분배의 원리상 주주총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이 모두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주주제안의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한정된 것이고, 경영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상법시행령 제12조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IV. 거절의 효과와 대처방안

과거 실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2019092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회사가 주주제안권을 거절할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고찰해보겠다.

먼저 이사회가 주주의 의안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즉 주주가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의제를 다루면서도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올리지 않고 이를 통지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상법 제363조의2를 위반한 위법한 결의이다. 따라서 의안제안을 무시한 결의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반면 이사회가 주주가 제안한 의제 자체를 부당하게 거절하여 주주총회의 의제로 상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의제 자체가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주주제안에 대응하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주가 주주제안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제제안의 부당거절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다른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의제제안을 거부당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시 의제를 제안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기업으로서는 주주제안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 남용 방지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실제로 주주제안의 경우 기관투자자를 통하여 행사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외국의 과격한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 그 남용은 실로 심각하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경우 책임 있는 주주제안을 위해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제안한 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1년 동안 'rock up(매매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앞으로 주주제안이 활발해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될 것을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먹튀(먹고 튀는 것)'와 이상한 주주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주제안의 핵심은 주주가 올바른 판단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부족이나 개인의 이기심으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제안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주주제안은 단순히 효과적이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의 가치 극대화보다 정치적 목표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주주제안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제안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소수의 조치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요건과 행사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한다면 주주제안권이 기업이나 소수주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것이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II. CCG 아젠다 ①

###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요약

- ✓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신임 이사의 경험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사회, 경영진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함
- ✓ 외부 제공업체가 신임 이사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외부감사인 및 보상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임
- ✓ 신임 이사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절차는, 과정을 안내하는 체크리스트 또는 마일스톤의 포함 여부에서 시가총액 규모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OT)은 신임 이사가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와 문화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사들이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통찰력, 자원을 제공하고, 임기 시작부터 이사회 논의 및 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의 구체적인 방식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신임 이사의 경험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사회, 경영진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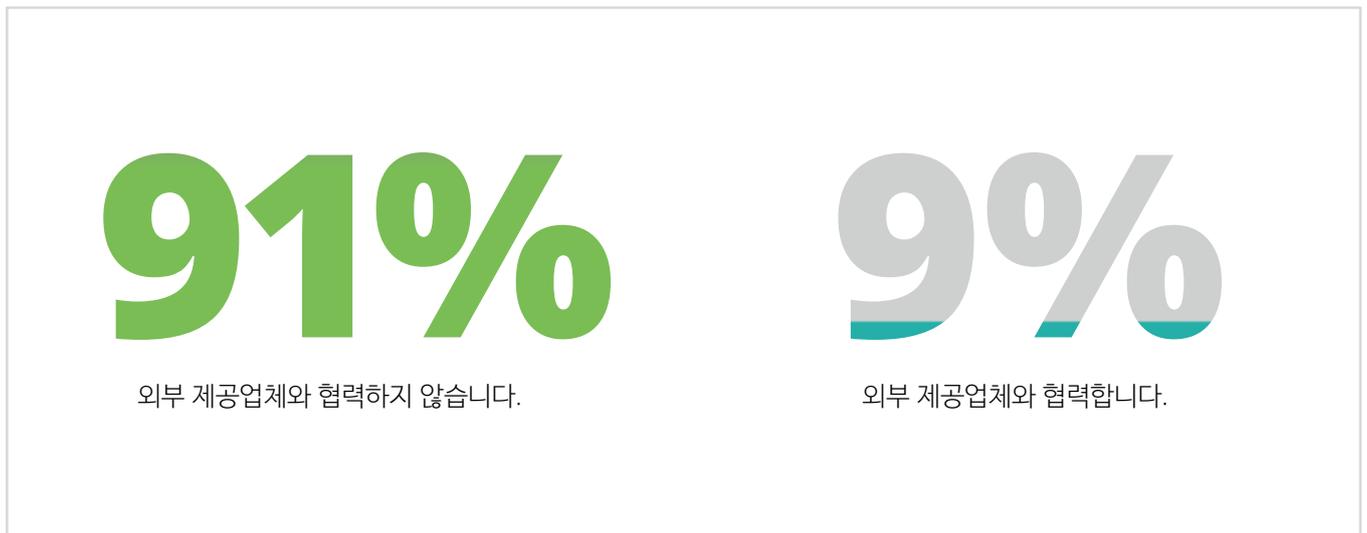
본 보고서는 기업거버넌스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제시하며, 사외이사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관한 자료 제공, 경영진의 참여, 외부 업체의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y)\*, 고문변호사 및 기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로, 다양한 규모와 업종에 속한 113개 상장기업을 대표하고 있으며<sup>1)</sup>, 서베이 결과는 이들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질문에는 실제 응답 수가 제공됩니다. 일부 질문의 경우,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응답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와 동 보고서의 2018년 과월호에서 제시된 유사한 질문과의 비교를 위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y): 미국, 영국 등의 기업에서 기업 법무 및 주주 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그림 1> 외부 제공업체가 신임 이사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과 참여 방식에 대해 명시해 주십시오. (97명 응답)



일부 응답자는 외부 제공업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응답으로는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신임 위원을 위해 각각 외부감사인 및 보상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이사 후보군 구축 및 유지를 지원하는 이사 리쿠르팅 전문 회사와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ies)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외부 법률 자문이 포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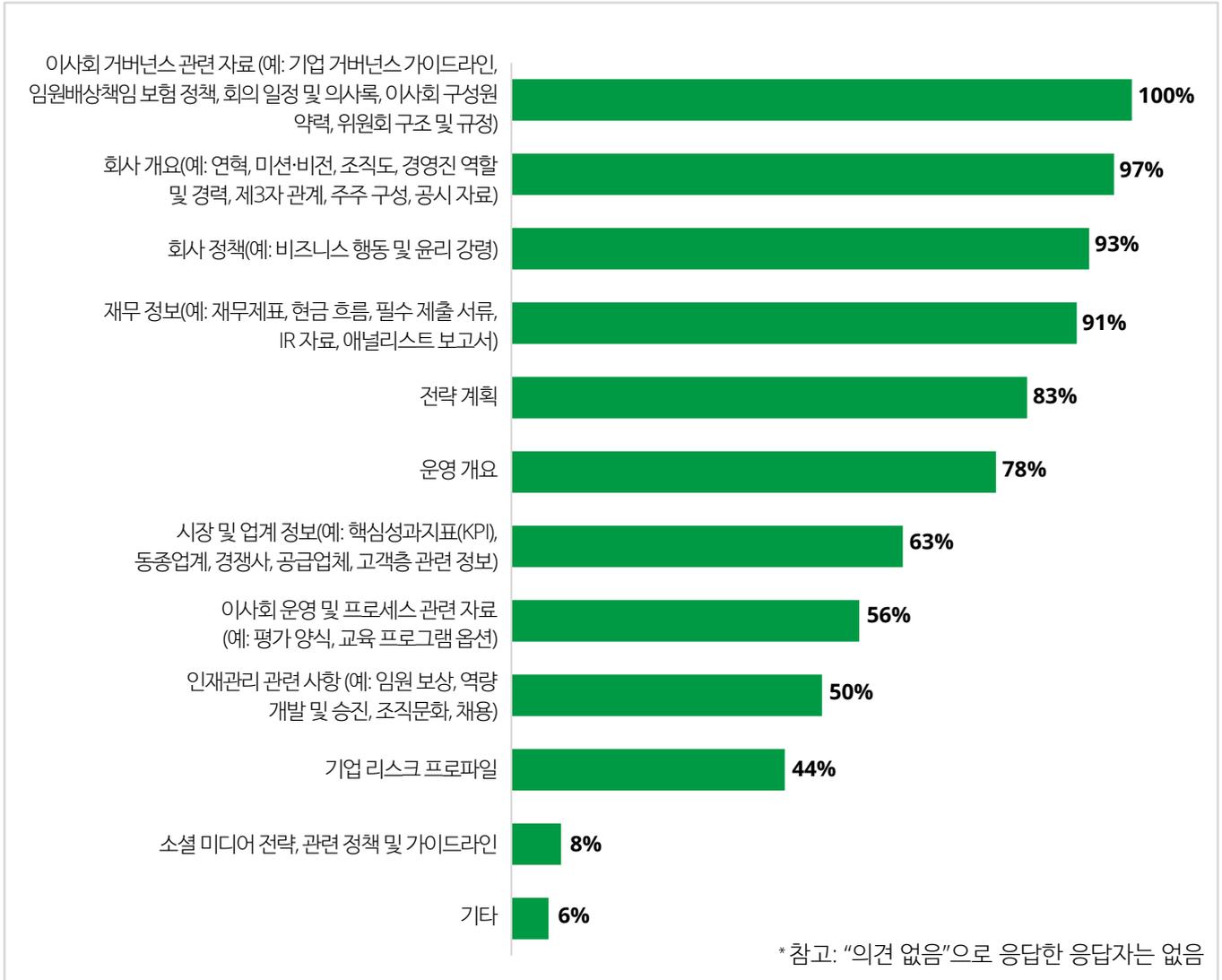
1) 기업 규모별 분포: 대형 상장법인(메가주, 대형 상장법인 포함) 52% (시가총액 100억 달러 초과), 중형 상장법인 45% (시가총액 20억~100억 달러), 소형 상장법인 (소형주, 마이크로캡, 나노캡 포함) 3% (시가총액 20억 달러 미만). 응답 기업의 산업별 분포: 금융 서비스 33%, 소비자재 26%, 에너지 자원 및 산업 24%, 기술, 미디어 및 통신 12%,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6%

본 보고서의 전체 상장법인 응답에는 소형 상장법인의 응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대한 개별 서베이 결과는 응답자 모집단이 제한적이므로 보고서가 제시하는 인구통계에서 제외됩니다.

II . CCG 아젠다 ①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그림 2> 다음 중 신임 이사 오리엔테이션 및/또는 온보딩 프로그램(공식 또는 비공식)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포함] (105명 응답)



시가총액 규모별 제공 자료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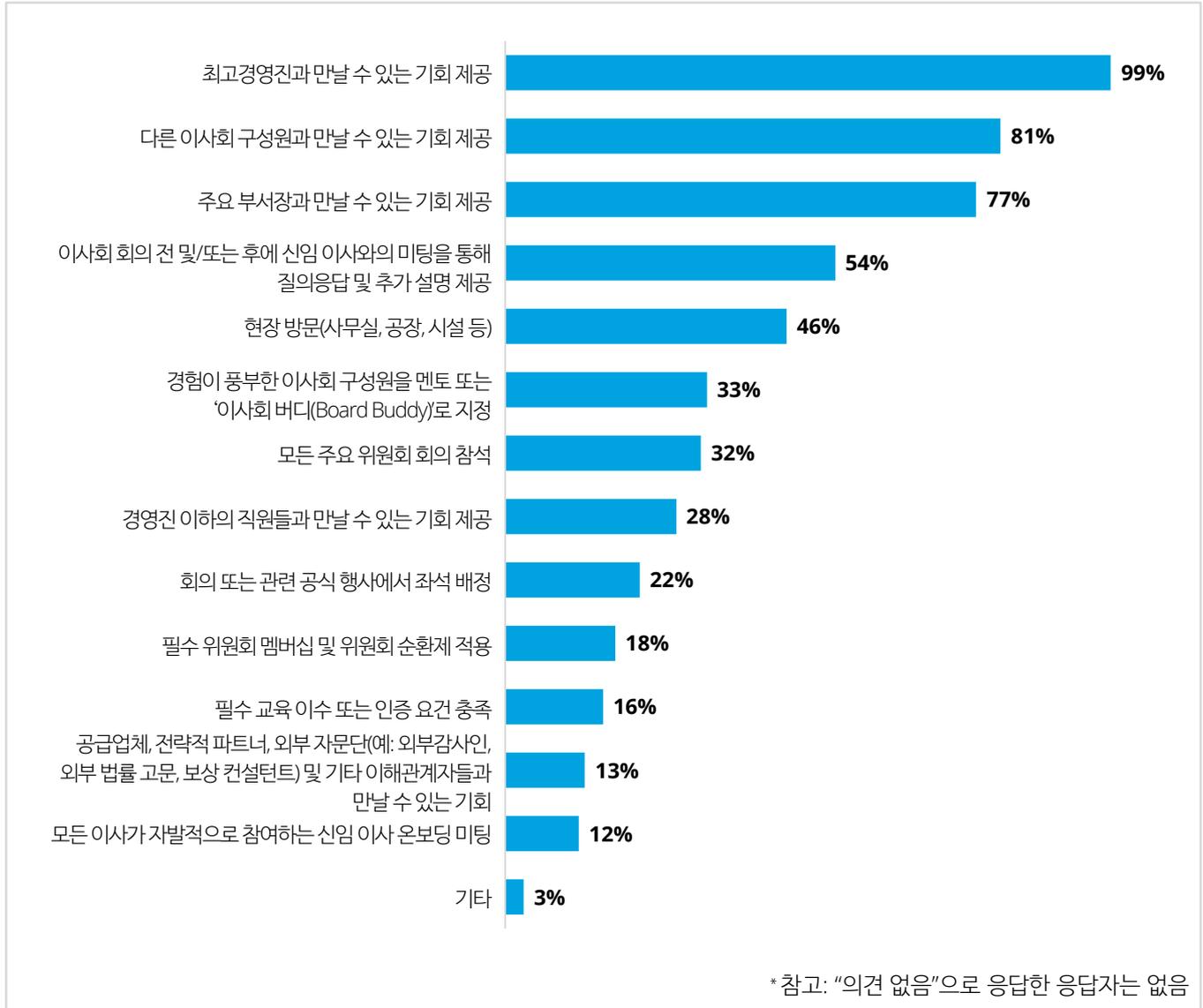
- 시장 및 산업 정보 (예: 핵심성과지표(KPI), 동종업계, 경쟁사, 공급업체, 고객층 관련 정보) - 대형 상장법인 58%, 중형 상장법인 69%
- 이사회 운영 및 프로세스 관련 자료 (예: 평가양식, 교육 프로그램 옵션) - 대형 상장법인 64%, 중형 상장법인 50%
- 인재관리 관련 사항 (예: 임원 보상, 역량 개발 및 승진, 조직문화, 채용) - 대형 상장법인 64%, 중형 상장법인 33%
- 기업 리스크 프로파일 - 대형 상장법인 55%, 중형 상장법인 33%

본 서베이 결과는 2018년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보고서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며, 당시 서베이에서는 중형 상장법인의 57%가 시장 및 산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II. CCG 아젠다 ①

##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그림 3> 다음 중 귀사의 오리엔테이션 및/또는 온보딩 프로그램(공식 또는 비공식)에서 신임 이사에게 제공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포함] (103명 응답)



시가총액 규모별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이사회 구성원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대형 상장법인 89%, 중형 상장법인 70%
- 경험이 풍부한 이사회 구성원을 멘토 또는 '이사회 버디(Board Buddy)'로 지정: 대형 상장법인 40%, 중형 상장법인 26%
- 이사회 회의 전 및/또는 후에 신임 이사와의 미팅을 통해 질의응답 및 추가 설명 제공: 대형 상장법인 62%, 중형 상장법인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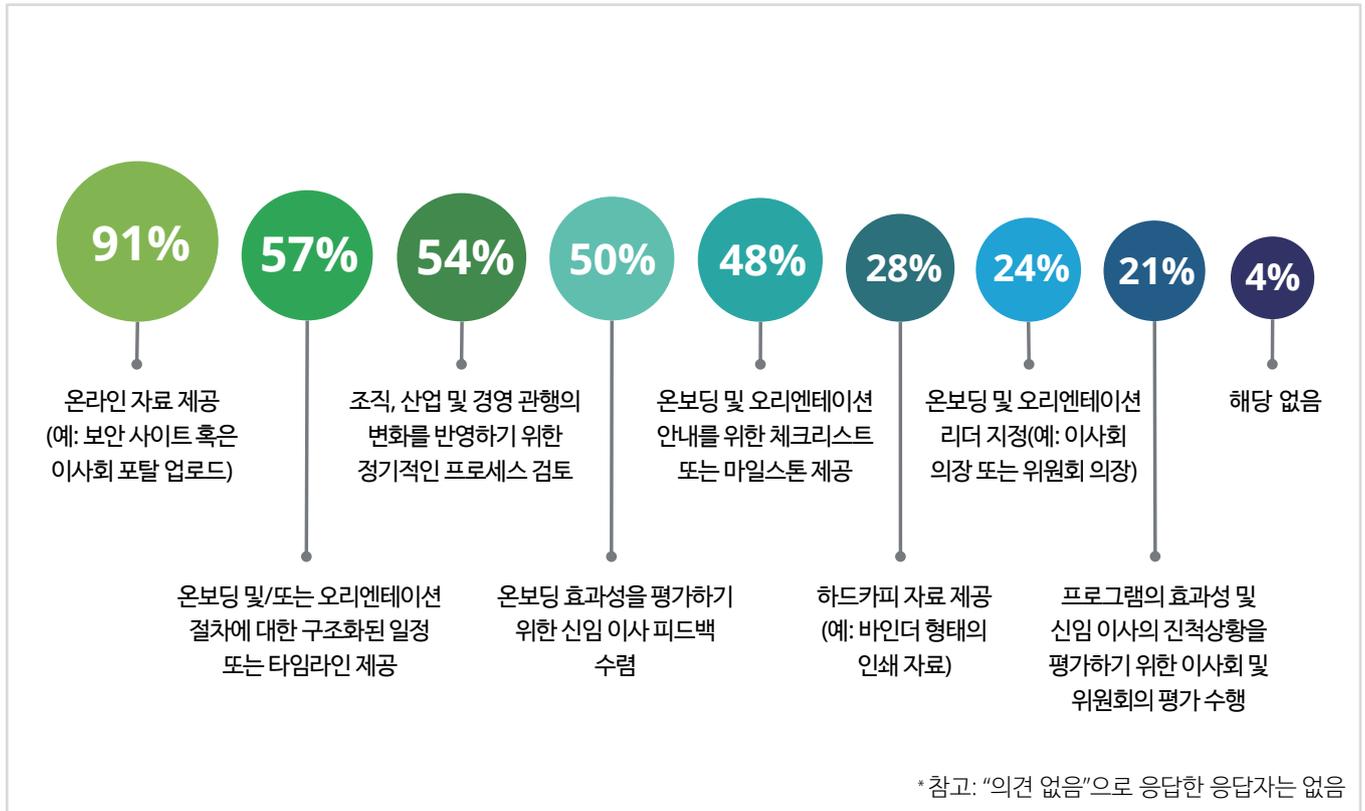
2018년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보고서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서베이에서는 59%가 사무실, 공장, 시설 방문을 실시하고(대형 상장법인 61%, 중형 상장법인 57%), 79%가 다른 이사회 구성원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대형 상장법인 77%, 중형 상장법인 82%), 13%가 경험이 있는 이사에게 멘토 역할을 부여(대형 상장법인 14%, 중형 상장법인 12%)했다고 응답했습니다.

II. CCG 아젠다 ①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그림 4> 귀사의 신임 이사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포함] (101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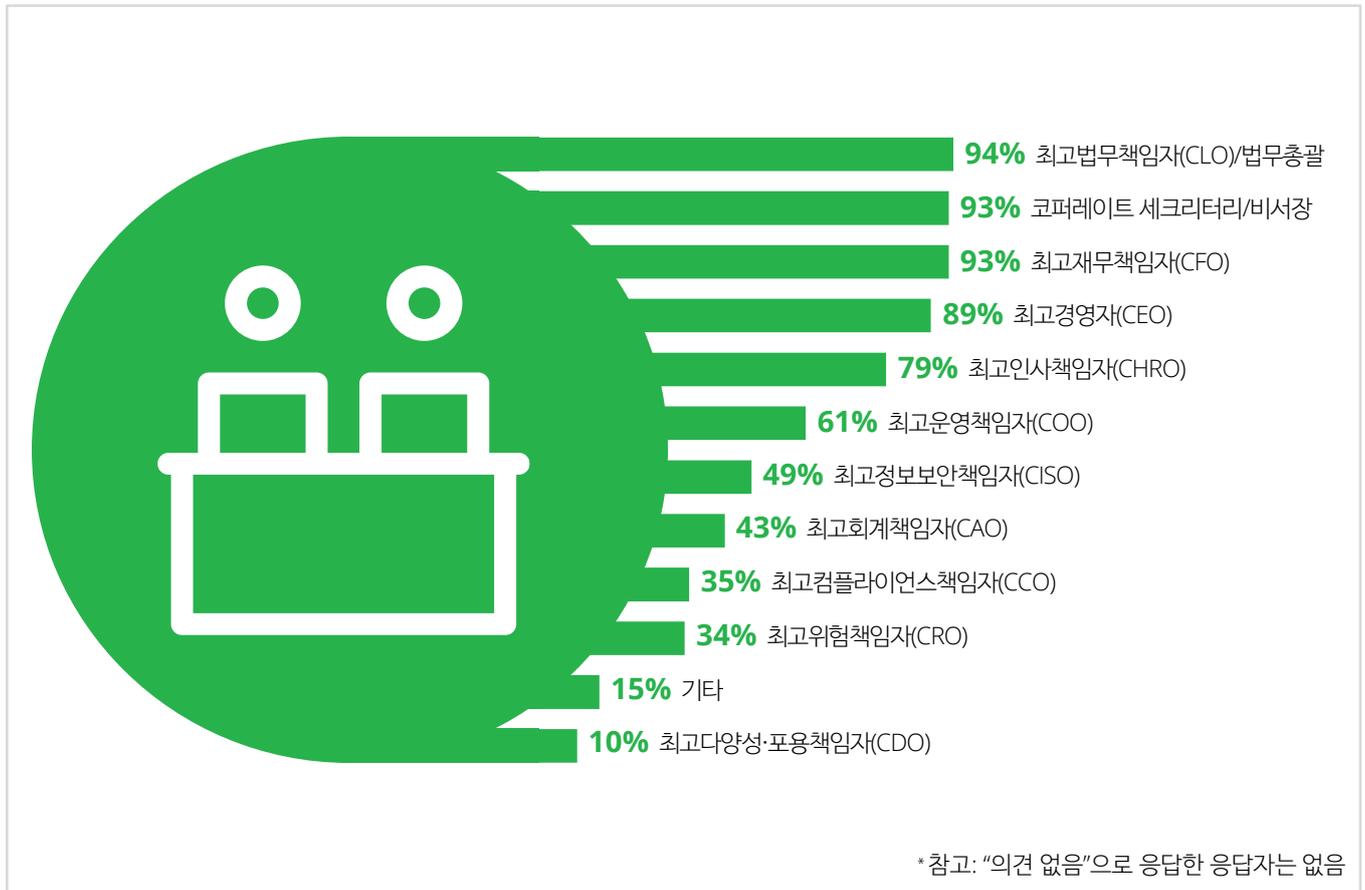
응답자의 91%가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고 응답하여, 온라인 자료 제공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 나타났으며, 28%만이 하드카피 자료를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안내하는 체크리스트 또는 마일스톤의 포함 여부였으며, 대형 상장법인의 52%와 중형 상장법인의 42%가 해당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II. CCG 아젠다 ①

##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그림 5> 신임 이사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진은 누구입니까?

[중복응답 포함] (100명 응답)



대부분의 기업(최소 93%)이 이사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진으로 최고법무책임자(CLO), 최고재무책임자(CFO),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 또는 유사 직위를 포함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가장 적게 참여하는 직위는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CCO), 최고위험책임자(CRO), 최고다양성·포용책임자(CDO) 또는 유사 직위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별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인사책임자(CHRO) - 대형 상장법인 85%, 중형 상장법인 73%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 대형 상장법인 55%, 중형 상장법인 42%
- 최고회계책임자(CAO) - 대형 상장법인 57%, 중형 상장법인 29%

## II. CCG 아젠다 ②

### 2024 회계연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시사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 2024 회계연도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의견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중요한 비적정 사유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 2,578사의 202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상장회사의 2,509사(97.3%)가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대비(97.4%) 0.1%p 하락함
- ✓ 2024 회계연도 상장회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6사(3.3%)로 전기대비 1사가 감소함
- ✓ 외부감사인이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6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6사,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10사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의견불일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 수행이 요구됨
- ✓ 2024 회계연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 기업 86사 중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64사(74%)로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을 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 최근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지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논의배경

- 2024 회계연도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중요한 비적정 사유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2022 회계연도에는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전격 시행함
  - 2023 회계연도부터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는 면제되지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실시되어야 함<sup>1)</sup>

1) 금융위원회,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2022.12.05.

-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최근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sup>2,3)</sup>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3 회계연도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었고, 감사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계도위주'로 감리 수행하며 예외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가 허용되었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기업부담을 감안하면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도입 시기를 5년간 유예함 (2024 회계연도 → 2029 회계연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도입시기가 2025 회계연도에서 2030 회계연도로 연기됨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23년 5월)되었으나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sup>4)</sup>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적용됨
-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함 ('24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가능)<sup>5)</sup>
  - 다만, 회계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1천억원미만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026 사업연도부터 시행예정임

<표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대상 회사의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시행 시기 <sup>6)</sup>

구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
상장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1천억원 ▲ (FY25 의무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1천억 ▼ 금융회사 (FY25 의무적용)</li> <li>• 자산1천억 ▽ 비금융회사 (FY26 의무적용)</li> </ul>
대형 비상장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1천억 ▲ 금융회사 (FY25 의무적용)</li> <li>• 자산1천억 △ 공시대상 기업집단소속회사</li> <li>• 자산1천억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li> <li>• 자산5천억 △ 기타 비상장회사 (이상, FY26 의무적용)</li> </ul>

-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보고자인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및 내부통제 관점의 비적정 사유 등 현황의 이해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2) 금융위원회, 「회계제도 보안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2023.12.13.

3) 금융감독원,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2023.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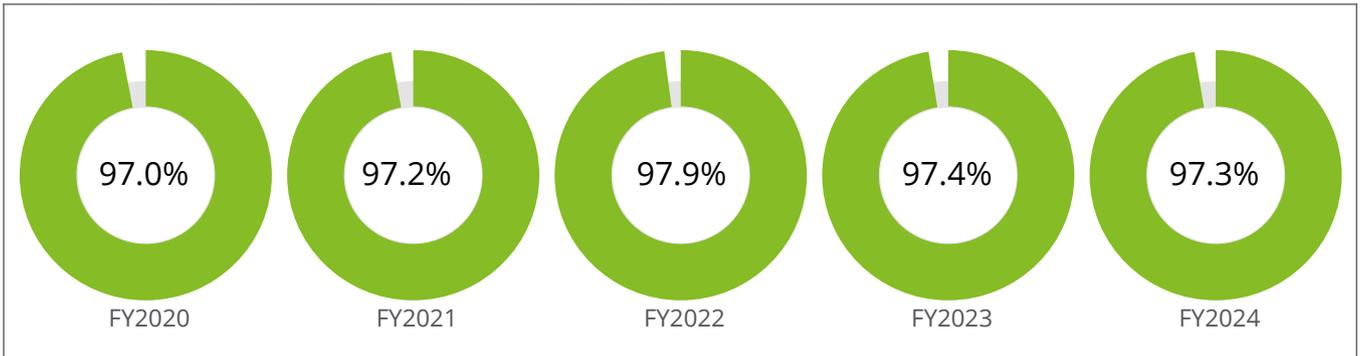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5,6) 금융감독원,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024.11.11.

FY2024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재무제표 감사 의견

- 상장회사 2,578사의 FY2024 감사보고서를 분석대상으로, 상장회사의 2,509사(97.3%)는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대비(97.4%) 0.1%p 하락함
  - 최근 5년간 큰 폭의 변동없이 완만한 수준을 유지중임

<그림 1> 최근 5년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의견 비율 추이 <sup>7,8)</sup>



- FY2024 기준 상장회사 69사(2.7%)가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의견을 수령하여 전기대비(66사) 0.1%p 증가하였으며 주요 비적정 사유로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 항목이 꼽혔음
  - 한정의견은<sup>9)</sup> 7사(0.3%)가 수령하였으며 전기대비(7사) 비율 비교로는 변동 없음
  - 의견거절은<sup>10)</sup> 62사(2.4%)가 수령하였으며 전기대비(59사) 0.1%p 증가함

<표 2> FY2024 상장회사 재무제표 감사의견 <sup>11)</sup>

구분	시장유형 (단위:사)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적정	791	1,610	108	2,509	97.3%
비적정	15	45	9	69	2.7%
한정	2	5	-	7	0.3%
의견거절	13	40	9	62	2.4%
소계	806	1,655	117	2,578	

7,11)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해당 회계연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관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함. FY2023 분석대상은 2,514사, FY2024 분석대상은 2,578사임

8) 금융감독원, 「2023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FY2020-FY2022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 비율 추이, 2022.05.31.

9) 재무제표 감사의견 관련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회계감사기준 705 문단7, 회계감사기준 570 문단23)

10) 재무제표 감사의견 관련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 (회계감사기준 705 문단8~9, 회계감사기준 570 문단23)

<표 3> FY2023 상장회사 재무제표 감사의견 <sup>12)</sup>

구분	시장유형 (단위:사)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적정	784	1,542	122	2,448	97.4%
비적정	14	47	5	66	2.6%
한정	3	4	-	7	0.3%
의견거절	11	43	5	59	2.3%
소계	798	1,589	127	2,514	

□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규모가 작을 수록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5.5%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소규모 기업은 상대적으로 약한 재무구조 또는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표 4> FY2024 상장회사 자산규모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율 <sup>13)</sup>

구분	1천억원 미만		1천억~5천억원		5천억~2조원		2조원 이상		소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적정	874	94.0%	1,054	99.0%	379	99.7%	202	99.5%	2,509	97.3%
유가증권	45	4.8%	297	27.9%	254	66.8%	195	96.1%	791	30.7%
코스닥	727	78.2%	751	70.5%	125	32.9%	7	3.4%	1,610	62.5%
코넥스	102	11.0%	6	0.6%	-	-	-	-	108	4.2%
한정	5	0.5%	2	0.2%	-	-	-	-	7	0.3%
유가증권	2	0.2%	-	-	-	-	-	-	2	0.1%
코스닥	3	0.3%	2	0.2%	-	-	-	-	5	0.2%
코넥스	-	-	-	-	-	-	-	-	-	0.0%
의견거절	51	5.5%	9	0.8%	1	0.3%	1	0.5%	62	2.4%
유가증권	8	0.9%	3	0.3%	1	0.3%	1	0.5%	13	0.5%
코스닥	34	3.6%	6	0.6%	-	-	-	-	40	1.6%
코넥스	9	1.0%	-	-	-	-	-	-	9	0.3%
소계	930	100%	1,065	100.0%	380	100%	203	100%	2,578	100%

1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함

13)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5년 3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함

**FY2024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 FY2024 상장회사 중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6사(3.3%)로 전기대비 1사가 감소함
  - FY2024 감사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1,648사 중 33사 (2.0%)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이 도출되어 전기대비 0.2%p 하락함
    - FY2023 감사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1,609사 중 35사 (2.2%)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
  - FY2024 검토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930사 중 53사 (5.7%)에서 비적정 검토 의견이 도출되어 전기대비 변동없음
    - FY2023 검토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905사 중 52사 (5.7%)에서 비적정 검토 의견
- FY2024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2조 이상인 상장회사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점은 주목할 사안임

<표 5> FY2024 자산규모 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 결과: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sup>14)</sup>

시장구분	검토 대상		감사대상						소계	
	1천억원 미만		1천억~5천억원		5천억~2조원		2조원 이상			
유가증권	5	9.4%	13	43.3%	3	100%	-	-	21	24.4%
코스닥	39	73.6%	17	56.7%	-	-	-	-	56	65.1%
코넥스	9	17.0%	-	-	-	-	-	-	9	10.5%
소계	53	100.0%	30	-	3	-	-	-	86	100%

<표 6> FY2023 자산규모 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 결과: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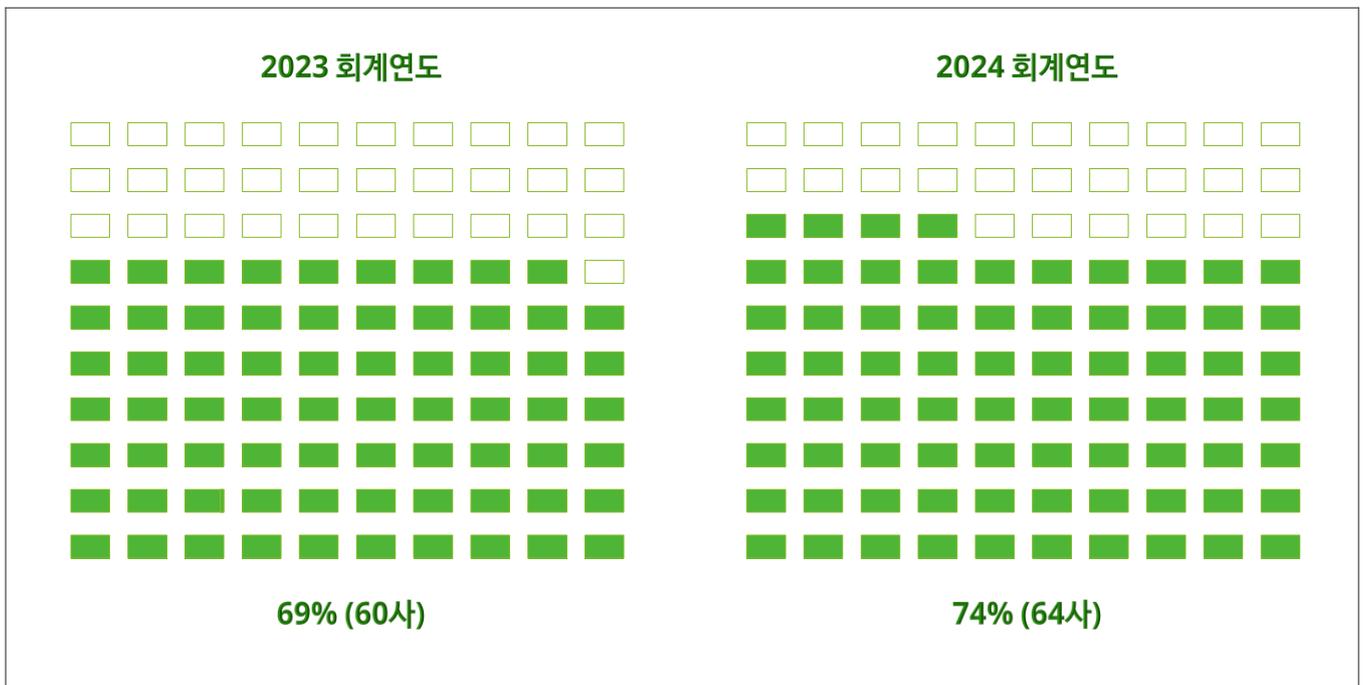
시장구분	검토 대상		감사대상						소계	
	1천억원 미만		1천억~5천억원		5천억~2조원		2조원 이상			
유가증권	6	11.5%	11	34.4%	1	50.0%	1	100%	19	21.8%
코스닥	36	69.2%	21	65.6%	1	50.0%	-	-	58	66.7%
코넥스	10	19.2%	-	-	-	-	-	-	10	11.5%
소계	52	100%	32	100%	2	100%	1	100%	87	100%

14)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5년 3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가 포함된 2,578사를 모수로 함

15)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가 포함됨 2,514사를 모수로 함

- FY2023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대상이며 FY2024 상장회사 중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효과적으로 준비한 결과로 고려됨
- FY2024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 기업 86사 중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64사(74%)로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전기대비 5%p 상승함
  - FY2023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 기업 87사 중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60사(69%)임
  -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을 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대상 비적정의견 기업 중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의견 기업 비중 <sup>16)</sup>



16)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해당 회계연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함. FY2023 분석대상은 2,514사, FY2024 분석대상은 2,578사임

내부통제 관점의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 FY2024 기준 회사 지배기구 등이 주목해야 할 내부통제 관점(재무제표 작성 절차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 포함)에서 비적정 감사의견과 검토의견을 받은 86사중 총 297건의 비적정 사유가 파악되었음
  -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26.3%)가 비적정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폐쇄적인 투자 의사결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수행하여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회계처리 과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의미함
  - ‘범위 제한’(19.5%) 및 ‘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8.1%)도 국내의 관행적인 비적정사유로 언급되고 있음
  -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환기되고 있는 항목인 ‘부적절한 공시 통제’(7.7%)와 ‘자금 통제 미비’(7.1%)도 비적정 주요 사유의 하나임
  -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10.4%), ‘업무분장 미비’(1.3%) 및 ‘정보기술통제 미비’(0.3%) 같은 통제환경 또는 회계역량 등도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7> 내부통제 관점의 FY2022~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sup>17)</sup>

비적정사유	회계연도					
	FY2022		FY2023		FY2024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	72	25.8%	71	25.4%	78	26.3%
범위 제한	44	15.8%	54	19.3%	58	19.5%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	47	16.8%	49	17.5%	31	10.4%
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	21	7.5%	20	7.1%	24	8.1%
부적절한 공시 통제	2	0.7%	8	2.9%	23	7.7%
자금 통제 미비	29	10.4%	18	6.4%	21	7.1%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1	3.9%	10	3.6%	11	3.7%
임직원 윤리의식 또는 준법사항 준수 미비	3	1.1%	2	0.7%	9	3.0%
법규 미준수	3	1.1%	3	1.1%	7	2.4%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5	1.8%	3	1.1%	5	1.7%
지배기구의 비효과성	6	2.2%	6	2.1%	5	1.7%
업무 분장(Segregation of duty) 미비	6	2.2%	3	1.1%	4	1.3%
내부감사기능 미비	20	7.2%	18	6.4%	4	1.3%
정보기술통제(ITGC) 미비	3	1.1%	2	0.7%	1	0.3%
기타 사유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7	2.5%	13	4.6%	16	5.4%
<b>소계</b>	<b>279</b>	<b>100%</b>	<b>280</b>	<b>100%</b>	<b>297</b>	<b>100%</b>

17)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해당 회계연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함. FY2022 분석대상은 2,428사, FY2023 분석대상은 2,514사, FY2024 분석대상은 2,578사임

-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 내부통제) 주요 비적정 사유로 '회계인력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비중은 국내와 유사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타 항목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주었음
  -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정보기술통제(ITGC) 미비'(26%), '업무분장 미흡'(62%) 및 '적시에 정확한 공시 미이행'(2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국내 현황과 차이가 있음
  - 이에 대한 이해의 접근방식은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이 적용된 것임

<표 8> 최근 미국 ICFR 주요 비적정 사유 Top 5 <sup>18)</sup>

비적정사유 항목 (복수응답 포함)	2022 회계연도 비중 <sup>18)</sup>	2023 회계연도 비중 <sup>19)</sup>
회계인력 전문성 및 인력 부족	68%	73%
업무분장 미흡	58%	62%
정보기술통제 (ITGC) 미비	22%	26%
적시에 정확한 공시 미이행	36%	25%
불규칙한 거래패턴	17%	19%

18)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nineteen-year review」, 2023.08.

19)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2024.08.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과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 의견간 불일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의견, 대표자는 운영현황 및 실태보고와 감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것으로 요약됨
- 외부감사인이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6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6사(7.0%)로 전기대비 2.2%p 하락하였으며,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10사(11.6%)로 전기대비 2.4%p 상승하는 등 의견불일치가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경영진 평가에 대한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기업 내 감사(위원회) 감독을 위한 지원조직 운영 미흡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2024 회계연도 기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한 기업은 25사에 불과하였음

<표 9>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포함할 공시 내용

보고자	보고서 상 포함 내용	공시사항	FY2022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 의견 회사 수 <sup>20)</sup>	FY2023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 의견 회사 수 <sup>21)</sup>	FY2024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 의견 회사 수 <sup>22)</sup>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 설계와 운영</li> <li>• 상시적/정기적 점검체계</li> <li>• 효과성 점검의 객관적 지표</li> <li>• 최종의견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실태 보고서</li> <li>• 규정과 조직 및 인력사항</li> </ul>	15 (17.8%)	8 (9.2%)	6 (7.0%)
감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 여부 확인</li> <li>•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질적 운영 평가</li> <li>• 운영실태보고의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실태 평가보고서</li> </ul>	20 (23.8%)	8 (9.2%)	10 (11.6%)
외부 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또는 검토의견</li> </ul>	84 (100%)	87 (100%)	86 (100%)

20,21,2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해당 회계연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함. FY2022 분석대상은 2,428사, FY2023 분석대상은 2,514사, FY2024 분석대상은 2,578사임

- 금융당국에서는 방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규정 중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부여됨에 따라 경영진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감사 및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참고해야 함
  -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규준을 보완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
  -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 및 세부 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
    - ① 재무보고 위험과 통제 식별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 ③ 통제의 미비점의 효과 → ④ 평가 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절차와 운영 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할 사항을 규정

<표 10>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신설 · 추가 사항<sup>23)</sup>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 주총 이사회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 →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포함</li> <li>•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자금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li> </ul>

- 금융당국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바,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하여 실무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자율규제 규정화를 통해,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될 것임

23)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 명확화」, 2023.12.29.

결언

-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최근 5개년간 큰 변동없이 예년 수준을 유지함
  - 적정의견 비율: FY2020 97.0% - FY2021 97.2% - FY2022 97.9% - FY2023 97.4% - FY2024 97.3%
- 2024 회계연도 기준 상장회사에서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6사로 유가증권시장 21사, 코스닥시장 56사와 코넥스시장 9사이며 전기대비 1사 감소함
- 올해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2년차로, 2024 회계연도 기준 감사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중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은 없음
  -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형법인이라는 사유도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에 대비한 다년간의 선제적 노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 이슈의 감소로 해석될 수 있음
- 내부통제 관점에서 국내 기업의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는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78건, 26.3%) - '범위 제한'(58건, 19.5%) -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31건, 10.4%) - '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24건, 1.1%) - '부적절한 공시통제'(23건, 7.7%)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미국의 경우 ICFR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로 '정보기술통제'(26%), '업무분장 미흡'(62%) 및 '적시에 정확한 공시 미이행'(25%) 항목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국내와 중요한 차이점임
- 외부감사인이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6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6사(7.0%)로 전기대비 2.2%p 하락하였으며,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10사(11.6%)로 전기대비 2.4%p 상승하는 등 의견불일치가 나타났음
  - 경영진 평가에 대한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기업 내 감사(위원회) 감독을 위한 지원조직 운영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과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 의견간 불일치의 정도가 커서 중단기 차원에서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은 자사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의 진행이 요구되는 시점임
  - 외부감사인이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6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6사(7.0%)이며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10사(11.6%)로 의견불일치가 나타났음
- 2024 회계연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비적정 의견 기업 86사 중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64사(74%)로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을 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이 금융당국에 부여됨에 따라 경영진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감사(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확보, 외부감사 및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참고해야 함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 2023년~2024년 금융회사의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 모두 공시' 비율은 전년 대비 뚜렷한 개선을 보임
- ✓ 이사회, 위원회 전 영역에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이 10%p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사회는 97.4%(38사)로 14.9%p 상승함
- ✓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 공시 사례는 4개사(10.3%)로 아직 드물지만, 전년 대비 5.3%p 증가하면서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확산되는 긍정적 흐름을 나타냄
- ✓ 다만, 공시의 실효성과 구체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바, 평가결과의 표현은 대부분 '우수', '적정' 등 긍정적 서술에 편중되어 있고, 환류(피드백) 체계는 물론 재선임 및 보수 책정과의 연계 여부, 개선 이행 공시 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실질적 활용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이사회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논의 배경

-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전략, 리스크 관리, 경영진 감독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며, 이사회 성과평가 실시가 제도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매년 이사회의 운영 현황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sup>1)</sup>
  - 비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감사)에 대한 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여부와 평가하지 않았을 시 그 구체적 사유를 공시해야 함
-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평가대상을 이사회 전체,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와 재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제1항, 동 시행세칙 제7조의2 제1항

- 본 보고서는 2023년~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들의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의 실시 및 공시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표 1> 지배구조 모범규준 >> ② 이사회 리더십 >> 1. 이사회 역할과 책임

1.11

- 이사회는 경영진 및 이사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사회 평가의 필요성** 경영진 및 이사의 활동내용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사회 평가방법과 절차**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단위,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객관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외부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직무수행 내용은 기업의 실적 및 추가상승률, 장기 경영목표의 달성여부, 동종 산업 내 타 기업의 보상내용 등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사회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가 활동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활동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며 경영진 및 이사에 대한 보상심의 또는 재선임 결정의 근거자료로 이용한다.

<표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상 사외이사 평가 관련 원칙<sup>3)</sup>

내용

-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2025.02.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평가 공시 현황

-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전체의 구성과 운영, 기능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임
  -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경영진 감독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안건 심의의 충실성 등도 포함됨
  - 이사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함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39개사 모두 이사회 평가방법을 공시하였으며, 이 중 평가방법과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은 38개사(97.4%)로 전기 대비 각각 2.5%p, 14.9%p 상승함
  - 특히, 이사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모두 공시한 회사 비율은 대폭 상승(14.9%p)하여 고무적인 변화를 보임

<표 3>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 <sup>4)</sup>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
기업 수	39	33	39	38	+ 2.5%p	+ 14.9%p
비율	97.5%	82.5%	100.0%	97.4%		

- 이사회 구성, 역할, 운영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절차)과 결과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권장되며, 평가주체는 이사 전원 또는 사외이사와 임직원으로 구분되며, 자기평가·이사 상호평가·직원 평가·설문방식·정성평가(서술형)·정량평가 등을 조합하여 활용중임
  - 일부 금융사는 이사회 의장에 대한 별도 항목을 두거나 인터뷰 실시 등 다양한 방식의 평가도 병행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사회 평가결과가 '우수, '적정' 등 긍정적 표현으로만 제시되어, 실질적 개선사항 도출이나 피드백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임
- 다음의 공시 사례는 각각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평가방식을 고도화한 경우와, 내부 자가진단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한 경우임

4)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수는 2023년은 40사, 2024년은 39사임

<표 4>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 - Case 1 (외부기관 활용)<sup>5)</sup>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매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반영하여 외부 평가를 도입하였는데, 2000년 00월에 개최된 제 0회 이사회에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00를 선정하였고, 동년 0월에 개최된 제 00회 이사회에서는 00에서 글로벌 기관의 평가 지표 등을 벤치마킹하여 변경한 평가 기준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00는 변경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2000년 0월에 2000년도 활동에 대한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 주체는 사외이사과 임직원으로 구분됩니다. 각 평가주체별로 평가하는 세부 평가 항목은 기존 5 점 척도 점수 체계의 한계 극복 및 정성적 평가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 항목별 수행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는 단계형 척도'와 '평가 항목별로 충족하는 조건을 개수 기준으로 점수화하는 요건형 척도'를 혼합 적용함으로써 문항별 배점 구간을 0 점에서 최대 7 점 이내로 분포하도록 하는 등 평가 문항 및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는 서면 혹은 전자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문항별 평가 및 의견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 평가 항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주체	세부 평가 항목
이사회 평가	이사회	사외이사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역할과 책임</li> <li>• 이사회 구조</li> <li>• 이사회 운영</li> <li>• 이사회 지속가능성</li> <li>• 이사회 평가</li> </ul>
		이사회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역할과 책임</li> <li>• 이사회 구조</li> <li>• 이사회 운영</li> <li>• 이사회 평가</li> </ul>

평가 결과는 설문지의 구성상 단계형과 요건형 척도 문항의 배점 구간이 0 점에서 최대 7 점 이내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바, 해당 문항별 점수를 100 분위 형태로 환산하여 평가 영역별로 평균점수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산정하였습니다.

평균점수구간	평가결과
90점 이상 ~ 100점 이하	최고 수준
80점 이상 ~ 90점 미만	기대 수준 이상
70점 이상 ~ 80점 미만	기대 수준
60점 이상 ~ 70점 미만	보통
60점 미만	미흡

5) 2024년 A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사례 참고

## &lt;표 4&gt;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 - Case 1 (외부기관 활용) (계속)

2000년 0월에 개최된 제 00회 이사회에 보고된 2000년도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점수구간	평가결과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최고 수준
이사회 구조	최고 수준
이사회 운영	최고 수준
이사회 지속가능성	최고 수준
이사회 평가	최고 수준

<표 5>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 - Case 2 (내부평가)<sup>6)</sup>

당사는 이사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초에 전년도 이사회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주체는 이사 전원이며 평가항목은 4개 부문,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이사회 구성 규모 적정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등 10 개 문항
- 이사회 기능과 적정성: 이사회의 자문 견제 및 감시기능 수행의 적정성 등 5 개 문항
- 이사회 책임: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등 3 개 문항
- 주주 권리 및 주주 관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한 이사회 의사결정 여부 등 2 개 문항

평가방법은 각 문항별 5등급(S등급~D등급)의 평가지표에 대해 이사 전원이 자가진단하는 '5등급 척도 무기명 설문평가'와 '정성평가(서술형 등)' 방식이며 평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안 확정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이사회 평가결과는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 이사회 평가결과는 2025년도 제2차 이사회(2000.00.00.)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평가결과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이사회 구성 규모의 적정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선출 및 평가 시스템의 적절성', '안건 적시 제공 및 충분한 사전설명'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아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 절차를 통해 높은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이사회 기능과 역할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 및 계획에 대한 충분한 토의', '경영성과 및 주요지표 등에 대한 주기적 감독'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이사회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경영진의 중요한 업무집행상황을 충실하게 감독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이사회 책임 부문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공정한 입장 견지', '논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이사회에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관계 부문은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재무보고 자료의 적정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이해관계 및 입장 고려 여부'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핵심원칙을 반영함으로써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와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습니다.

6) 2024년 B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사례 참고

III. 데이터 포인트 ①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공시 현황

-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목적, 주체, 기준, 방법(절차) 및 결과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권고됨
  - 주요 평가 항목의 예로는, 이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규모 및 개최 시기의 적절성,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업무 위임의 타당성, 회의 시간과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위원회와 경영진 간의 의사소통 수준, 이사회 운영에 대한 위원회의 기여도,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수행의 충실성 등이 있음
  - 일부 금융회사는 위원장에 대한 별도 평가 항목을 구성함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결과를 공시한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별 평가 실시 비율에는 편차가 있으나, 4개 위원회 중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평가방법 공시 및 평가방법·결과 공시 비율이 높은 추세이며, 보수위원회는 가장 낮게 나타남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 평가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89.7%(35사)이고 전기대비 2.8%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87.2%(34사)로 전기대비 12.2%p 대폭 상승함

<표 6> 2023년-2024년 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성과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 7)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
기업 수	37	30	35	34	- 2.8 %p	+ 12.2%p
비율	92.5%	75.0%	89.7%	87.2%		

7)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수는 2023년은 40사, 2024년은 39사임

III. 데이터 포인트 ①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후보추천위원회 평가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94.9%(37사)로 전기대비 2.6%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89.7%(35사)로 전기대비 14.7%p 대폭 상승함

<표 7> 2023년-2024년 금융회사 후보추천위원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sup>8)</sup>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
기업 수	39	30	37	35	- 2.6 %p	+ 14.7%p
비율	97.5%	75.0%	94.9%	89.7%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위험관리위원회 평가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94.9%(37사)이고 전기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89.7%(35사)로 전기대비 17.2%p 대폭 상승함

<표 8>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위험관리위원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sup>9)</sup>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
기업 수	38	29	37	35	- 0.1 %p	+ 17.2%p
비율	95.0%	72.5%	94.9%	89.7%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보수위원회 평가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84.6%(33사)로 전기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76.9%(30사)로 전기대비 19.4%p 대폭 증가함

<표 9> 2023년-2024년 금융회사 보수위원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sup>10)</sup>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
기업 수	34	23	33	30	- 0.4 %p	+ 19.4%p
비율	85.0%	57.5%	84.6%	76.9%		

8,9,10)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수는 2023년은 40사, 2024년은 39사임

## III. 데이터 포인트 ①

##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 아래는 감사위원회 성과평가에 대한 실제 공시 사례로, 위원회 평가 목적, 기준, 방식,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성과평가 공시의 작성 예시로 참고할 수 있음

<표 10> 금융회사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sup>11)</sup>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평가 세부내용]

- 평가주체: 감사위원 전원
- 평가근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00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0항, 제0항
- 평가주기: 1년(매년 0월 평가)
- 평가기준: 구성(전문성) / 기능·역할 / 운영 / 감사위원회와 경영진간 의사소통 / 감사위원장의 역할
- 평가방식: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방식 : 객관식(5점 척도) + 주관식

※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반영한 평가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주관식 문항 도입

이사회는 매년 0월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전문성), 기능과 역할, 운영, 경영진간 의사소통 및 위원장의 역할 등이 포함되며, 동 평가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회계 및 재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등 이사들의 역량 및 경험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감사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원 요청 시 추가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가 견제와 감시를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고 등 주기적 점검을 통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감사위원장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평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위원회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는 개선세를 보였으나, 다수의 회사는 평가 결과를 '적정', '우수' 등으로 요약하고 있어, 정량·정성 결과에 대한 세부 설명, 재선임 및 보수 책정과의 연계 여부, 피드백 절차 등에 대한 공시가 부족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실효성과 환류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됨

11) 2024년 C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사례 참고

III. 데이터 포인트 ①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2023년-2024년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평가(내부) 공시 현황

-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는 각 이사회 업무에 대한 기여도를 정성·정량 요소에 따라 평가하는 절차로, 이사의 회의 출석률, 전문성, 경영에 대한 이해도, 건설적인 토론 참여 등 연간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권고됨
  -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내부 인력에 의한 평가 등을 병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이사의 특장점뿐 아니라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 인지 여부, 충실성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 검토 시 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다수의 공시에서는 내부평가 결과가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나 보수 책정 등의 실질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연계되었는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환류 체계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주요 개별 사외이사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다음의 사항으로 정리됨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개별 사외이사 내부평가 방법에 대해 공시한 비중은 87.2%(34사)이고 전기대비 7.8%p 하락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82.1%(32사)로 전기 대비 10.4%p 하락함
  - 개별 사외이사의 내부평가 실시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은, 2023년에 내부평가를 실시했던 일부 금융회사(2사)가 2024년에는 외부평가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11> 2023년-2024년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내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sup>12)</sup>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
기업 수	38	37	34	32	- 7.8 %p	- 10.4%p
비율	95.0%	92.5%	87.2%	82.1%		

- 아래의 공시 사례는 개별 사외이사 내부 성과평가의 평가 주체, 기준, 방식, 결과 및 제도적 개선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항목의 공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임

12)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수는 2023년은 40사, 2024년은 39사임

<표 12>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내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sup>13)</sup>

## (1) 내부 및 동료평가

## (가) 개요

- 평가주체: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초에 사외이사 활동을 근접 관찰할 수 있는 내부 인력에 의한 내부 평가와 각 사외이사에 대한 동료 평가로 구분됩니다.
- 평가기준: 사외이사별로 연간 활동내역, 이사회/위원회 및 기타 회의 출석률(%)을 참고하여 4개 평가항목(충실성, 전문성, 리더십,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내부 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절차: 각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와 사외이사별 이사회/위원회 출석 자료에 근거하여 동료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평가, 동료평가 등 다면적으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당사는 2000년 말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내부평가 및 동료평가 결과 O인의 사외이사 전원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핵심원칙을 반영하고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현 사외이사 평가체계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안)'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2000년 제OO차 이사회(2000.00.00.):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안)

2000년부터는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안)을 반영하여 사외이사 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다)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 [사외이사 OOO]

- 충실성: 모든 이사회와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고, 안건에 대해 꼼꼼히 사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생략) 특히 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 또한 교육·세미나에 적극 참석하여 금융, 감사제도, 지배구조 관련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경영진과 공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
- 전문성: (생략) 금융업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식견을 쌓은 금융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 또한, 기업지배구조 및 ESG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OO회장으로 선임되어 각종 포럼, 교육,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여성 이사 확대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리더십: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힘썼으며,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화합과 조화를 이끄는 등 리더십을 발휘함. 또한 OO 출신 사외이사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경영진 견제 및 이사회 균형 유지에 기여하며 지배구조 안정화에 이바지함 (생략)
- 기여도: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원활히 운영함. OO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금융 식견과 통찰력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제안함. 또한 감사위원으로서 내부통제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책무구조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함

13) 2024년 D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사례 참고

III. 데이터 포인트 ①

2023년-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2023년-2024년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평가(외부) 공시 현황

-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는 각 이사가 이사회 업무에 기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의 참석 여부 등 충실성과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 인지 여부와 각 이사의 특징점에 대해 다루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외부평가의 주체,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하며, 외부 평가기관의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술을 포함함
  - 평가항목 사례로 이사회·위원회 및 교육·연수 참석율이 포함된 활동평가와 자기평가, 상호평가 및 직원평가 방식이 반영된 역량평가 등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평가주체의 독립성 및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평가 프로세스의 객관성 확보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서는 금융회사에서 2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권고되며, 기술내용은 내부평가의 내용과 유사함
- 2024년 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중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해 주요 개별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4사(10.3%)로 아직 많지 않으나, 전년 대비 5.3%p 상승한 수치를 보이며 개선된 추세를 보임
  -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 역시 10.3%(4사)로, 전기 대비 동일한 폭(5.3%p)으로 증가한 점은 외부평가 공시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긍정적 변화로 해석될 수 있음

<표 13> 2023년-2024년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외부) 방법 및 결과 공시 현황<sup>14)</sup>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년 GAP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평가방법 공시 비중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
기업 수	2	2	4	4	+ 5.3%p	+ 5.3%p
비율	5.0%	5.0%	10.3%	10.3%		

- 일부 금융회사는 외부기관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기관이 회사 및 사외이사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혀 독립성을 확보하며, 정보 접근 제한 등 이해관계 차단장치도 함께 공시하고 있음
- 아래는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한 개별 사외이사 외부평가의 공시 사례로, 평가항목 설계, 설문 구성, 평가 수행까지 외부 자문기관이 담당함
  - 평가방식은 정성·정량을 병행하고, 전문분야별 맞춤형 문항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인 구조로 설계됨
    - 정량지표는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됨(출석률, 연수 참여율, 활동시간, 주요 발언 횟수, 자료요청 건수 등)
  - 평가내용은 전문성, 참여도 등 세부항목별로 구체화되었으며, 본인평가(20%)와 동료평가(80%)를 병행하고, 경영진 평가는 폐지함으로써 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14)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 수는 2023년은 40사, 2024년은 39사임

<표 14>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외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 <sup>15)</sup>

##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에 의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재선임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00조 제0항)

특히,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핵심원칙을 반영하여 2000년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제2000-00차 이사회 결의) 사외이사 평가체계 주요 개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평가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혼합하였으며 출석률, 연수 참여율 등 정량지표를 확대(1개→5개)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문분야별 맞춤형 질문을 도입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 및 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진평가 비중을 폐지하고, 본인(20%) 및 동료(80%)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가에 외부 자문기관을 도입하였습니다. 외부 자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설문지 구성, 평가 프로세스 설계 및 외부 자문기관이 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주기적인 평가체계 점검을 도입하였습니다. 매년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평가 내용 및 설문항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넷째, 평가 피드백 강화입니다. 인터뷰, 주관식 항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한 유의미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이라는 평가의 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2) 내부평가

## (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이사회는 전년도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를 익년도 초(0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정성 지표(6개 항목)]

- 역량 및 전문성 (금융산업 이해도, 전문분야별 맞춤형 질문)
-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공정한 직무수행, 주주 및 고객이익 제고)
- 발전 기여도 (경영 조언, 새로운 관점 제시)
- 이사의 역할 (회사 통합 관리, 대표이사 후보 발굴)
- 의사소통 능력 (합리적 근거 제시, 의견 경청)
- 회사 이해도 (단기, 중장기 경영전략 이해)

[정량 지표(3개 항목)]

- 충실성 (이사회(내위원회) 및 간담회 참석률)
- 참여도 (교육/연수 참석률 및 활동시간)
- 적극성 (이사회 중요발언 및 자료요청 횟수)

15) 2024년 E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사례 참고

<표 14> 금융회사 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외부) 방법 및 결과 공시 사례 (계속)

③ 평가 절차 : 외부 평가기관이 주관하여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웹 기반의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본인 평가, 동료 평가를 진행합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주체 · 기준 · 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가 선정한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해당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2000년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 본인평가, 동료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00월 말 기준 재임 중인 7명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 역량 및 전문성, 기여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력 및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 내부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분한 자격요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2000년 0월 실시)

[사외이사 000]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 주요내용
역량 및 전문성	최우수	금융, 재무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를 검토하고, 수익 창출 및 재무 안정성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최우수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 소비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생략)
발전 기여도	최우수	전문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음 (생략)
이사의 역할	최우수	자회사의 경영현황, 내부통제 등 회사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능한 대표이사 후보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의사소통 능력	최우수	당사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및 설득력 있는 의견 제시 등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기여함 (생략)
회사 이해도	최우수	당사의 단기, 중장기 전략 방향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전략적 목표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충실성	최우수	이사회(내위원회) 및 간담회 참석률 100%로 사외이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
참여도	최우수	교육 및 연수 참석률 100% 및 활동시간 000시간으로 우수한 참여도를 보임
적극성	최우수	이사회 및 내위원회 회의 시 경영전략, 재무·리스크관리 중심의 적극적인 발언을 함

개선 방안

□ 이사회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은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에 대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장함<sup>16)</sup>

(1) 이사회 평가체계의 고도화 (모범관행 원칙 26)

- 이사회,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 각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항목별 세부기준을 설계함으로써 평가 목적의 명확성과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함
- 정성평가는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혼합하고,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이사들의 실제 발언·판단·기여 등을 반영하는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예: 단순 척도형 외에 서술형 문항을 병행하여 구체적 행동 평가)
  - 이사회 의장 및 위원장에 대해서는 ‘리더십’, ‘의사결정 조율 능력’ 등 직무 특화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정량지표는 출석률, 활동시간, 질의·발언 횟수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되, 각 지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1~2개 항목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정량지표 비중은 전체의 30%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문 외에도 이사회 의장 또는 제3자 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의 주체는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자기평가·임직원평가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 객관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표 15> 평가대상별 평가항목 구성 예시

평가대상	평가항목 구성 예시	특징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운영의 효율성, 견제·감시 기능 수행 등	이사회 차원의 평가(의장 포함)
위원회	위원회 활동 실적, 안건 논의 수준, 독립성, 참여도 등	기능별 맞춤 평가 필요
개별 사외이사	정량평가(전문성, 출석률, 발언·질의, 자료요청 등) + 동료·자가평가	역할 기여도 중심 다면평가 적용

16) 금융감독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best practice)」, 2023.12.

## (2)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확대 (모범관행 원칙 27)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사록 제공, 인터뷰 실시 등)으로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을 설문 구성부터 수행, 피드백까지 평가 전 과정에 참여시키는 구조로 강화 가능함
  - 외부기관이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에 대해 설문 설계 및 평가 실행까지 담당하도록 하거나, 내부 평가체계를 점검·보완하는 방식으로 병행 적용 가능함
  - 외부기관 활용 시 회사 및 이사들과 해당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공시하여야 함

## (3) 평가체계의 정기 점검과 연속성 확보 (모범관행 원칙 28)

- 이사회·위원회·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전반적 체계는 최소 연 1회 내부 검토를 통해 정비하고, 최소 3년 주기로 외부 기관을 통한 점검을 병행하여 평가체계의 적정성 검토의 객관성을 확보함
  - 경영환경, 산업 트렌드, 감독당국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을 매년 갱신해야 함

## (4)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시 강화 (모범관행 원칙 29, 30)

- 평가결과를 단순 내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사외이사 재선임 및 교육·보완 계획 수립 등 실질적 의사결정과 연계되도록 개선해야 함
  - 일정 점수·등급 이상을 재선임 기준으로 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와의 연계를 명문화함
  -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사외이사별 교육 이력 및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의 환류(피드백) 구조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체계를 운영함
- 공시 항목은 평가 절차·방법·결과, 개선안, 전년도 개선안 이행사항 등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 의미가 있는 항목 중심으로 구체화함
  - 일부 금융회사는 평가결과 요약 외에도 사외이사별 발언 특징, 참여도, 전문성 발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신뢰도를 제고함

## 결언 및 시사점

- 2023년~2024년 금융회사의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는 제도적 틀 내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공시 수준 또한 전년 대비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이사회 및 주요 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결과를 모두 공시한 기업 비중은 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는 등 공시의 충실도가 다수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이사회는 97.4%(38사)로 14.9%p 상승함
  - 다만, 평가방법만을 공시한 기업 비중은 일부 항목에서 소폭 감소한 사례도 나타나 항목별 균형 있는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개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외부 전문기관 활용 사례가 4개사(10.3%)로 여전히 소수에 그치지만, 전년 대비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며 평가방식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외부평가를 도입한 일부 금융회사는 항목별 평가 및 피드백 구성, 공시 수준 등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평가결과의 표현은 여전히 '우수', '적정' 등 긍정적 서술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며, 항목의 구성, 기준, 해석 등이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평가결과가 실제 사외이사 재선임, 교육·보완 계획 등 실질적 의사결정과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공시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 평가결과가 보수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서상에서는 대부분 구체적 언급이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
  - 위원회 평가 및 개별 사외이사 평가에 있어 환류(피드백) 체계나 이행 내역 공시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수준임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사회,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 단위별로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평가항목과 기준의 체계적 정립이 필요함
  -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 보수 책정, 이사회 운영 개선방안, 교육·보완 계획 등 실질적 의사결정과 연계하고, 그 이행 내용도 공시를 통해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 항목 설계, 설문 수행, 피드백 제공 등 전 과정에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단순 내부 보고자료를 넘어서 투자자, 감독기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한 공시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 권장됨
- 궁극적으로, 이사회 성과평가는 지속가능경영과 신뢰받는 지배구조 정착의 출발점으로 기능해야 함
  - 금융회사는 공시의무 준수를 넘어,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이사회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주요 개정 내용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간 중복 부담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 방식 개선, 비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기간 선택권 부여,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근거 마련임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배경<sup>1)</sup>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5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5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개정 법령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sup>2)</sup>'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정유예의 법적 근거 및 유예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2024년 중 운영한 회계품질 종합개선 T/F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해 회계감리·제재 감경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함

#### 1)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됨
  - 주기적 지정유예 효과는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임

1)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2025.05.14.

2) 금융위원회,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합니다」, 2024.12.31.

Ⅳ. 주요 규제 동향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됨

<표 1>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감사기능 독립성(300)	1) (내부)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1인 분리선출 100점, 2인 이상 200점	200
	2) (내부) 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50
	3) (외부)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
감사기구 전문성(200)	4)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
	5)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
	6)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	100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250)	7) 회계·감사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부서 인력 및 내부감사·감사위원회 지원조직	50
	8)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 숙련도(상대평가)	40
	9)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40
	10)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 등기임원 60(추가) / 비등기임원 40 / 그 외 0	60
	11) 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권 * 지원조직 구성원의 평가 인사 불이익조치 발생시 ½내 감점	60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150)	12) 감사인 선임·공모절차 투명성	100
	13) 감사인 선임·공모 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
회계투명성 개선노력(100)	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정성 평가)	100
[가점] 외부 표창(+50)	16) 회계투명성 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최대 50)
[감점] 사회적 물의(-50)	17)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
합계		1,000 (최대 1,050)

Ⅳ. 주요 규제 동향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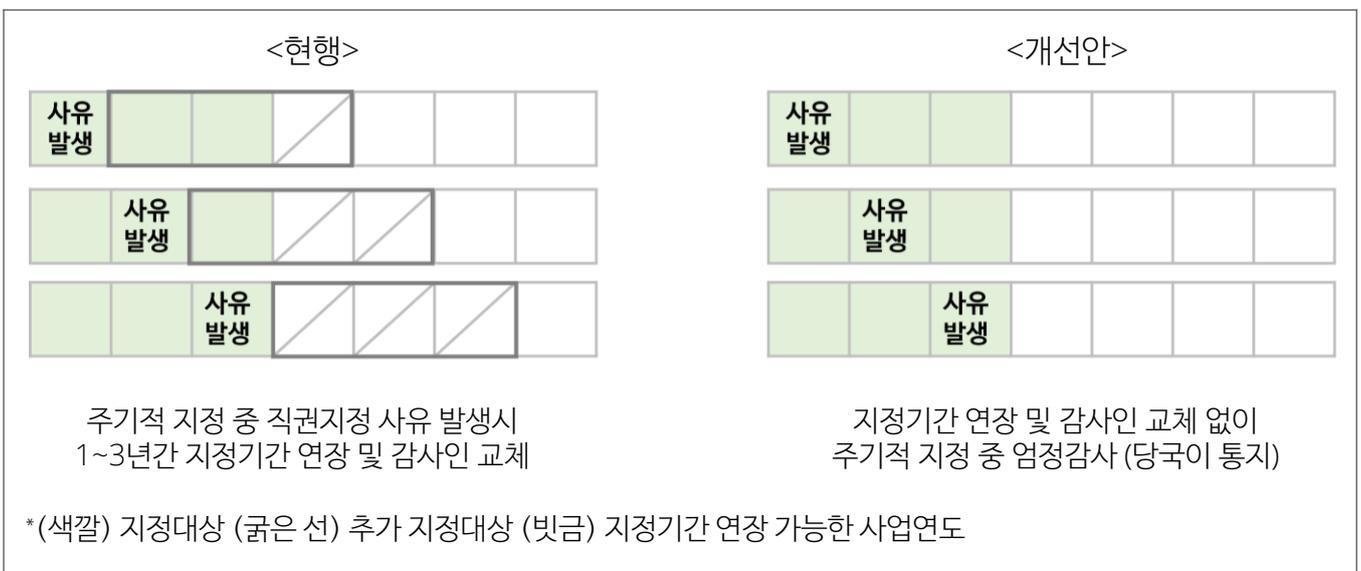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함
  - 평가위원회는 금융당국, 회계업계, 기업계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공정하게 구성하며, 평가 공정성을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 사외이사 역임, 법률·회계자문 제공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고, 평가위원은 심의가 시작되면 신청회사 임직원과 개별적 접촉이 금지됨

2)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당국이 지정한 독립적 외부감사인이 감사중임에도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감사인이 교체되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함
-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감사인이 엄정 감사하도록 개선되며, 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 등 회계부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이 연장됨
  - 재무기준 미달(3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미만 등), 대표이사 변경(3년간 3회 이상), 회사의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절차 위반 등

<그림 1> 현행 및 개선안



Ⅳ. 주요 규제 동향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3)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 매월 지정사유 발생 회사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 순으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차례로 배정하되, 감사투입 여력, 품질수준 등을 고려한 감사인 균을 분류하여 군마다 지정 가능 회사를 차등화 함 (예: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가'군만 가능)
  - 인원수, 감사부문 매출,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산정하고, 회사가 배정될 때마다 배정받은 감사인의 지정점수가 차감됨

<표 2> 감사인 지정방식

지정대상 선정	회사군 분류	감사인군 분류	감사인점수 산정	회사 ↔ 감사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사유 발생</li> <li>• 월별지정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규모 구분</li> <li>• 큰순서대로 나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구분요소</li> <li>• 충족여부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수*경력점수</li> <li>• 가산/차감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frac{\text{감사인점수}}{1+\text{지정수}*\text{규모}}</math></li> <li>• 순위대로 매칭</li> </ul>

- 금융당국이 회사의 지정감사인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회사의 자산 규모별로 감사인의 지정점수를 달리 차감하는데, 자산 2조원이상 회사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들 간에 감사위험, 감사투입 필요인력, 감사보수 등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됨
  -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함
-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함
  - 개정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 1개를 지정받는 경우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기업 5개를 지정받은 것으로 보아 감사인 점수를 차감함

<표 3> 감사인 지정점수 차등화

가중치 (지정제외점수)	자산 5천억미만	5천억~2조원	2~5조원	5~10조원	10조원 이상
변경전	1배(20점)	2배(40점)		3배(60점)	
변경후	1배(20점)	2배(40점)	3배(60점)	4배(80점)	5배(100점)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 4) 비상장회사 직권지정 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 현재 규정상 비상장사가 1~2년간 감사인 직권지정을 받게 되면 1~2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또다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음<sup>3)</sup>
- 앞으로는 '기업이 원할 경우' 최초 지정 시점에 최대 3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계속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을 도입할 예정임

## 5)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는 '25.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임
- 표창기업 선정 시 지배구조 취약회사<sup>4)</sup>는 선정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었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만큼,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함
-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며,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위반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함
  - 현재 공인회계사가 10년 내에 장관급 표창을 받거나, 회계투명성 제고 기여 공적으로 금융감독원 표창 등을 받은 경우 감리결과 조치시에 1단계 감경사유로 적용 중임

3) 2023년 상장회사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정감사인 초도감사시 기업·산업 이해 부족에 따른 비효율(42.6%)을 지적함

4) ESG기준원에서 평가하는 지배구조 등급이 C이하인 경우(전체의 약 46.5%에 해당)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회계심사·감리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할 예정임
- ✓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①빈틈없는·심사 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②제반 환경·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감리 실효성제고, ③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임
- ✓ 금융감독원은 2025년에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0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 1.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 방향<sup>1)</sup>

##### 1) 빈틈없는 심사 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감리절차 강화)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한 감리를 실시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조치 시 사전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전문가의견을 청취하는 등 중조치 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를 강화
  - 회사·감사인이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 (상장 전후 감독 강화) 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 확대를 통해 회계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상장직후 주가 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 (기술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회사)도 심사대상에 포함
  - 사업보고서 비제출 대상은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변경

1) 금융감독원,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2025.03.28.

## 2) 제반 환경 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 감리 실효성 제고

- (시스템화) '심사 대상 선정 ~ 감리종료' 전 과정을 시스템 내에서 보다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공시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 양정산정 자동화, 회계검토모형 현행화 등 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
  - 현장조사시 입수한 전자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여 입수자료 범위를 정교화하고, 동 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제재기준 개선)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상향을 추진하고, 횡령 등 기소 건은 공소장 등을 입수하여 신속 조치 등 장기 적체 건에 대한 별도 처리방안 마련
  - 그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논의 시 제기된 불합리한 기준 등 개선(금융위 협의 필요)
- (시의성 반영)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26년 테마심사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고 기 선정된 '25년 회계이슈<sup>2)</sup>(①수익인식, ②비시장성 자산평가, ③특수관계자 거래, ④가상자산 회계처리)는 신속히 심사 진행

## 3) 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 등 회계감독 선진화

- (감리방식 개편) 회계법인별 시장영향력 품질관리수준을 반영하여 정기감리 주기를 차등화(3~5년)하고, 취약부문 테마점검 강화
  - 품질관리감리, 감사인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 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종합 수행
- (조치 합리화) 그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논의 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금융위원회 협의 필요)하여 등록요건 및 수시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치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부서 내 심사전담자 지정 등 내부심사 강화
- (내부통제 감독강화) 중소형 회계법인의 취약부문인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주요 위반사례를 고유하여 재발방지 촉구
  - 회계법인의 건전 경영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지배기구 관련 공시확대 등 감독강화 방안 검토

2) 금융감독원, 「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5.06.14.

## IV. 주요 규제 동향 ②

##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2.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 실시대상

## 재무제표 심사·감리

-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0사<sup>3)</sup>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며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
-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10년 이상)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오류수정<sup>4)</sup>,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

## &lt;표 1&gt; 표본심사 대상

구분	내용
중점심사 회계이슈	•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한계기업 징후	• 관리종목 지정 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
기타위험요소	•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감사인 감리<sup>5)</sup>

- 과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0개 회계법인(가군 1사, 나군 5사, 다군 4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리대상 선정 후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
  - 회계법인 소속 군별로 3~7주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감리인력 현황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3)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 성격 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

5)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 23조 제6항,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

## Ⅳ. 주요 규제 동향 ②

##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해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

## &lt;표 2&gt; 중점 점검항목

내용
• 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 실효성
• 감사투입시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여부
• 비감사용역 제공 등과 관련하여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구축·운영 여부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 '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4년 말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6회 공동검사 실시

## IV. 주요 규제 동향 ③

###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요약

-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은 2025년 1분기 총 315사의 2,127개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함
- ✓ 2,127건 중 317건(14.9%)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하였고, 이는 전년(13.7%) 대비 1.2%p 증가한 수치임
- ✓ 주주의 권리 행사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주가치 제고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건이 상정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반대 권고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13.7% → 14.9%)하였음

#### 개요

- KCGS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5년 1분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315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함<sup>1)</sup>
  - 분석대상 기업의 시장별 분포는 유가증권시장 196사, 코스닥시장 118사, 코넥스시장 1사임<sup>2)</sup>

#### 의안분석 결과

- 분석대상 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에 총 2,127건<sup>3)</sup>의 안건을 상정했고, 임원 선임 안건이 1,063건(50.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KCGS는 2,127건 중 317건(14.9%)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으며, 이는 전년(13.7%) 대비 1.2%p 증가한 수치임
  - 반대 권고가 1건 이상인 기업도 전체 315사 중 183사(58.1%)로 전년 (53.9%) 대비 4.2%p 증가함

1) 한국ESG기준원,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5.04.25.

2) 분석 기준은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025년 2월 개정을 따름

3) 이사회 제안으로 한정

Ⅳ. 주요 규제 동향 ③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표 1>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4)

구분	전체	재무 제표 · 이익 배당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수 한도	기타 비정기 상정 안건 <sup>5)</sup>
				이사회					감사기구							
				사내 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 이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소계	감사 위원	감사	소계	계				
반대 권고수(건)	317	34	31	26	4	68	16	114	44	19	63	177	53	1	21	
상정 안건수(건)	2,127	321	220	332	64	346	87	829	200	34	234	1,063	315	124	84	
2025년 반대 권고율(%)	14.9	10.6	14.1	7.8	6.3	19.7	18.4	13.8	22.0	55.9	26.9	16.7	16.8	0.8	25.0	
2024년 반대 권고율(%)	13.7	6.6	17.8	8.7	4.4	16.2	21.8	12.7	18.4	43.5	24.4	15.1	14.8	0.7	28.7	
2023년 반대 권고율(%)	14.7	9.4	14.2	4.4	4.2	14.9	12.8	9.5	14.5	40.0	18.1	11.5	32.2	0.7	28.3	

1) 이익배당

- 올해 이익배당 안건으로 상정된 321개 안건 중 과소배당을 사유로 반대투표를 권고한 안건은 34건(10.6%)이며, 전년(6.6%) 대비 반대 권고율이 4.0%p 증가함
  - 최근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계획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이익배당 안건을 상정한 분석대상 기업(313사) 중 73사(23.3%)로 확인됨
  - 과소배당을 사유로 반대 권고한 기업(34사) 중 2사(5.9%)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으므로, 주주환원 수준이 낮은 기업들이 관련 공시수준 또한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 정관변경

- 145사가 220건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이 중 주주권 희석이나 주주권리 보호 미비 등의 우려가 있는 31개 안건(14.1%)에 대해 반대 투표를 권고함
  - 신주 또는 주식연계채권(CB, BW) 발행 한도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주주권 희석 우려로 인한 반대 권고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나, 서면투표제 폐지, 집중투표제 배제 등 주주권리 보호 미비 우려가 있는 정관 변경 안건의 수는 전년과 유사함

4) 한국ESG기준원,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5.04.25.

5) 임원퇴직금지규정 제·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분할,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등

## IV. 주요 규제 동향 ③

##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3) 이사선임

- 상정된 안건 829건 중 114건(13.8%)에 대해 반대 권고하여 반대 권고율이 전년(12.7%) 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외이사(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반대 권고율도 19.4% 수준으로 전년(17.7%) 대비 증가함
  -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훼손이 반대 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해당 사유의 반대 비중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55.4% → 61.0%)
  - 최근 2년간('23~'24년) 1건 이하였던 장기재임<sup>6)</sup>으로 인한 반대 권고가 올해 5건으로 증가함

<표 2> 2023~2025년 사외이사 반대사유별 안건 수 및 비율 <sup>7)</sup>\*

반대사유	2025년		2024년		2023년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법령상 결격사유 및 충실성 우려	11	13.4%	18	19.6%	19	24.1%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50	61.0%	51	55.4%	48	60.8%
장기재임	5	6.1%	1	1.1%	-	-
전문성 결여	1	1.2%	-	-	-	-
기타 <sup>8)</sup>	14	17.1%	17	18.5%	11	13.9%
성별 구성의 다양성 법률 위반	1	1.2%	5	5.4%	1	1.3%
합계	82	100%	92	100%	79	100%

\* 한 개의 안건에 두 개 이상의 반대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포함

6)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재임하는 연수가 6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계열회사에서의 재직 기간도 포함

7) 한국ESG기준원,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5.04.25.

8) 행정적·사법적 제재,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과도한 비감사용역 보수 등의 사유 포함

Ⅳ. 주요 규제 동향 ③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4)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각각 55.9%, 22.0%로,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12.3%p)하였으며,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반대 권고율 역시 소폭 증가(3.6%p)함
- 감사 선임 안건의 반대 사유 중 장기재임이 지난 2023년, 2024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59.1%)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비율 자체는 전년 대비 약 10%p 감소한 27.3%로 나타남
- 감사의 장기재임은 회사 경영진과의 유착 또는 이해관계 형성 등을 유발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sup>9)</sup>

<표 3> 2023~2025년 감사 반대사유별 안건 수 및 비율<sup>10)</sup>\*

반대사유	2025년		2024년		2023년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장기재임	13	59.1%	14	51.9%	13	76.5%
이해관계등 독립성훼손	6	27.3%	10	37.0%	1	5.9%
부적절한겸임및낮은 출석률	3	13.6%	3	11.1%	2	11.8%
회사가치훼손, 주주권익침해사유	-	-	-	-	1	5.9%
합계	22	100%	27	100%	17	100%

\* 한 후보에 여러 반대사유가 적용되어 반대사유 합계가 반대 권고 합계를 초과할 수 있음

9) 구현지, 박정민, 「2024 주주총회 리뷰(2)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 분석」, 한국ESG기준원, 2024.09.27.

10) 한국ESG기준원,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5.04.25.

Ⅳ. 주요 규제 동향 ③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경우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우려가 여전히 반대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반면, 과도한 비감사 용역 보수를 지급한 경우와 감사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연간 4회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의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2023~2025년 감사위원 반대사유별 안건 수 및 비율<sup>11)\*</sup>

반대사유	2025년		2024년		2023년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반대사유별 안건 수(건)	비율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29	63.0%	40	55.6%	25	52.1%
부적절한검임및낮은 출석률	2	27.3%	1	1.4%	7	14.6%
법령상 결격사유	3	13.6%	8	11.1%	0	0.0%
감사위원회4회미만개최	1	-	6	8.3%	2	4.2%
과도한비감사용역보수	4	8.7%	5	6.9%	7	14.6%
기타 <sup>12)</sup>	7	15.2%	12	16.7%	7	14.6%
합계	46	100%	72	100%	48	100%

\* 한 후보에 여러 반대사유가 적용되어 반대사유 합계가 반대 권고 합계를 초과할 수 있음

11) 한국ESG기준원,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5.04.25.

12) 회사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장기재임, 중요 이해관계자의 특수관계인 등의 사유 포함

## IV. 주요 규제 동향 ③

##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5) 주주제안

- 분석대상 기업 중 7사에서 총 80건<sup>13)</sup>의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41건(51.3%)의 주주제안 안건에 찬성투표를 권고함
- 올해 분석대상에 포함된 주주제안 안건은 배당(1건), 정관 변경(18건), 사내·기타비상무이사 선임(13건), 사외이사 선임(40건), 감사 선임(2건), 기타 안건(6건)임

<표 5> 안건 유형별 주주제안 현황 <sup>14)</sup>\*

구분	배당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사내·기타비상무·사외)	감사 선임	기타	합계
주주제안 상정 기업 수(사)	1	5	3	2	3	14
주주제안상정기업 수 합계대비비율	7.1%	35.7%	21.4%	14.3%	21.4%	100%
주주제안안건수(건)	1	18	53	2	6	80
주주제안안건수합계대비비율	1.3%	22.5%	66.3%	2.5%	7.5%	100%

\* 한 기업에서 여러 유형의 주주제안이 상정될 수 있어 안건 유형별 주주제안 상정 기업 수 합계는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전체 기업 수(7사)를 초과함

- 안건 수 기준으로 이사 선임의 비중이 66.3%로 가장 높으나, 안건 상정 기업 수 기준으로는 정관 변경안에 대한 주주제안 비중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 안건이 1사에서 총 51건 상정되었으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도 5사(5건) 상정되는 등 집중투표제 관련 주주제안 안건이 전년 대비 이례적으로 증가함

13) 회사측의 주주제안 수용에 따라 이사회 안으로 최종 상정된 안건은 포함되지 않음

14) 한국ESG기준원, 「2025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5.04.25.

## 시사점

- 주주총회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주환원 및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의 권리 행사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임
  -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배당 확대에 관한 주주제안의 수는 감소한 반면, 집중투표제 도입, 비핵심자산 매각,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임원 보수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의 이슈로 주주제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주주가치 제고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건이 상정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반대 권고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13.7% 14.9%)한 것으로 나타남
  - 이익배당의 경우 전년 대비 올해 주주총회에서 과소 배당을 사유로 한 반대권고가 증가하였으며, 과소배당을 사유로 반대 권고한 기업 대다수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음
  - 정관변경은 주주권리 보호 미비 우려가 있는 안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됨
  - 이사선임은 최근 2년간 낮은 수준이었던 장기재임으로 인한 사외이사반대 권고 수 및 비중이 다시 증가함

# V. FAQ 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에서 횡령 등 부정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 회계전문가의 참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요?

-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에서도 횡령, 불완전판매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 외관상 적정한 수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통제의 작동 여부 및 위험 대응 역량에 있어 감사위원회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점검이 요구됨을 시사함<sup>1)</sup>
  - 특히 자금 거래, 핵심통제 항목의 운영, 경영진의 회계정보 개입 가능성 등은 서면상 통제설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이행 수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ICFR의 설계 및 운영상의 전반적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로, 개별적 부정위험까지 포함하여 예외 없이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내부통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항목별 핵심통제 내용, 통제범위, 예외 적용 사항 등을 해석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관련 회계기준과 재무정보 흐름, 통제 설계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회계전문가는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고,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단지 형식적 요건에 부합한 것인지 혹은 실질적 위험 평가를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 이사회에 명확히 보고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신설된 항목(예: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소통, 회계정보 작성 과정에서의 경영진 개입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여부)의 경우, 회계·통제 전문가의 실무 기반의 전문성이 수반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1) 본고는 '2025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한국회계학회 공동 세미나' 세션 III-1에서 손혁 교수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 전문가의 중요성」(2025.05)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작성됨

V. FAQ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

□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 감사위원회내 실질적 회계전문가가 존재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표 1> 감사위원회내 실질적 회계전문가 역할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이 낮아지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며,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증가 (김광윤, 손혁, 김상헌,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가 비중은 2022년 기준 23.3%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li> </ul> </li> <li>• 회계·감사·통제 분야의 실무 경험자일수록 내부감사 권고사항의 이행률이 높고(Oussii and Boulila, 2021), ESG 관련 거버넌스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Pozzoli et al.,2022)</li> </ul>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하며<sup>2)</sup>,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의 자격 요건은 비교적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회계·감사 경험을 갖춘 인사를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부 사례에서는 제도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회계·감사 실무 경험이 제한적인 경우가 보고되는 경우도 있음
- 감사위원회에 회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이 실제로 회계감사나 내부통제 설계·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ICFR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역할과 구성원 간 전문성의 편차로 인해,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일부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함

<그림 1> 국내 회계·재무전문가 요건<sup>3)</sup>

<p>1. 회계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p>	
<p>3. 상장회사 회계 재무 분야 경력자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p>	
<p>4.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경력자 금융기관 정부 증권 유관기관 등에서 회계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2)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1호

3)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

V. FAQ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

□ 해외 주요국은 회계전문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NYSE 및 NASDAQ은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실무경험, 전문자격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EU 등도 감사위원회에 회계·감사에 대한 ‘실질적 경험’ 또는 ‘재무적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갖춘 구성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 시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전문성 확보 여부는 개별 기업의 판단과 운영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2> 해외 주요국의 감사위원회 내 회계전문가 자격 요건

구분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X법에 따라 재무전문가 최소 1인 존재 여부에 대한 이사회 결정 공시 요구<sup>4)</sup>, 회계 및 감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험이나 실질적 이해도 요구</li> <li>• NYSE 상장규정은 재무적 이해력(financial literacy) 및 회계 또는 관련 재무관리 전문지식 요구<sup>5)</sup></li> <li>• NASDAQ 상장규정 재무제표 이해도 및 회계·재무 관련 자격 또는 경력 요구<sup>6)</sup></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C(재무보고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침에 따라 최신 재무 경험 보유자 1인 이상 포함<sup>7)</sup></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재무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 포함<sup>8)</sup></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감사위원이 재무적 이해력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성 요건 구체화<sup>9)</sup></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재무 전문성과 산업 이해 요구<sup>10)</sup></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1인은 회계·감사에 대한 역량 보유<sup>11)</sup></li> </ul>

□ 아울러, 최근 도입된 내부통제위원회는 기업의 자금관리, 내부통제 기본방침 심의, 내부감사 점검 결과 공유 등 통제 전반을 포괄하며, 관련 위원의 관리의무 및 법적 책임 수준도 높아지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ICFR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두 위원회 간 역할이 일부 중첩될 수 있어 명확한 업무분장이 요구됨
- 내부통제위원회가 선관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및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회계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적 구성 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4) Sarbanes-Oxley Act, 229.407(d)(5)(i),(ii)

5)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7.(a),Commentary

6) NASDAQ Listing Rule 5600, 5605(c)(2)(A)(iv)

7)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Section 2.15

8)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원칙 4.11

9) National Instrument, PART 3. 3.8 & Audit Committee Guide, CHAPTER 3

10) 호주증권거래소, 「기업 지배구조 원칙 및 권고사항」, Principle 4. Recommendation 4.1

11) EU 감사위원회 관련 지침: Directive 2014/56/EU, Article 39

V. FAQ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기능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 구성 시 회계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전문성이 ICFR 운영 및 평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제도적·운영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인정되는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 외에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위원 구성의 내실화를 위한 추가적 기준을 검토할 수 있음
- 요약하면, ICFR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은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통제 실효성에 대한 보완적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회계전문가의 참여는 핵심통제 작동여부 점검,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해석, 내부통제 구조의 취약 지점 식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은 ICFR의 실효성 제고와 감사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전문가의 확보 및 적절한 배치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의 ICFR 점검 기능을 실질화하고 회계전문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기업 내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3> 기업이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

내용	Check
• 감사위원회에 실질적 회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가?	
• ICFR 운영실태보고서의 핵심통제 항목을 실제 점검하고 있는가?	
• 외부감사인인 ICFR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및 사후 점검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가?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ICFR·회계 관련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V. FAQ ②

###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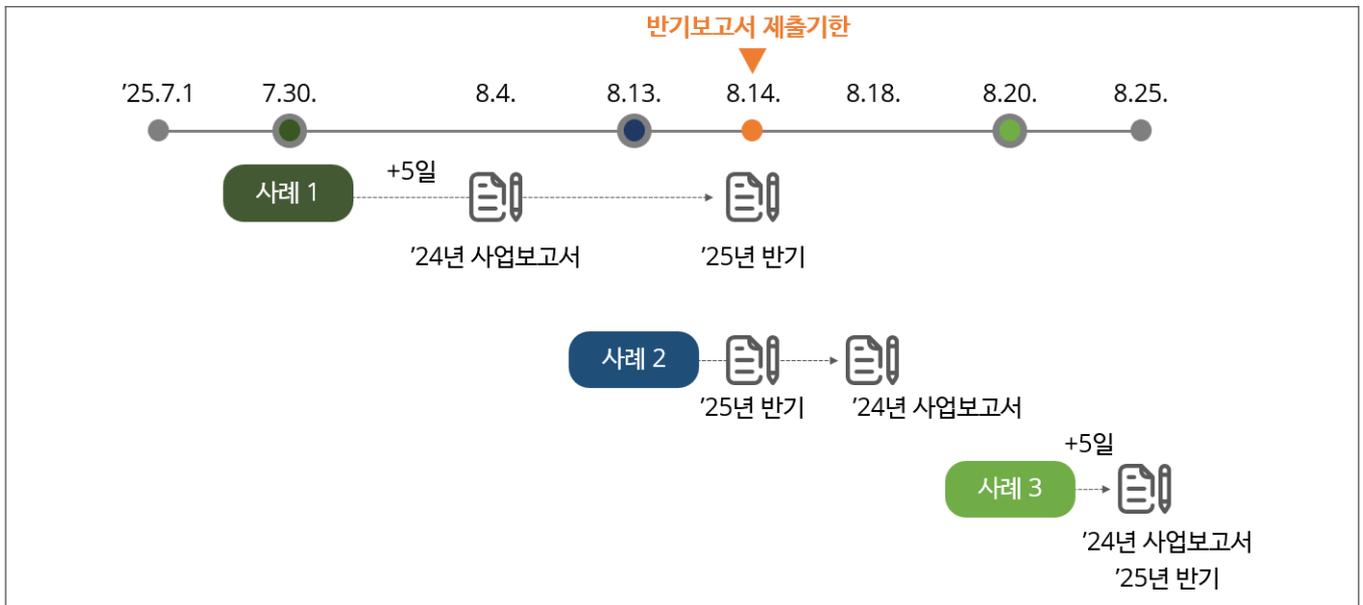
Q.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나요?

-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sup>1)</sup>하는 관련 '자본시장법'은 '25.7.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sup>1)</sup>
  -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으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음
-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법인) 또는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25.7.22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 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공시해야 함<sup>2)</sup>
  -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함

1) 금융위원회,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2024.12.27.

2) 금융위원회,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2025.05.22.

<그림 1> '25.3분기 중 제출의무 발생일자별 제출(공시) 기한(12월말 결산법인)



- (사례 1)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25.7.30.
  - 기한: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4 (5일 이내),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 (사례 2)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25.8.13.
  - 기한: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18. (5일 이내),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 (사례 3)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25.8.20.
  - 기한: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25. (5일 이내), 직전 반기보고서 '25.8.25. (5일 이내)
- '25.7.22.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 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하여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23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례 중 납입기일 당일 또는 1일 전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은 13.6%, 납입기일 당일부터 6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은 53.8%임
-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미공시)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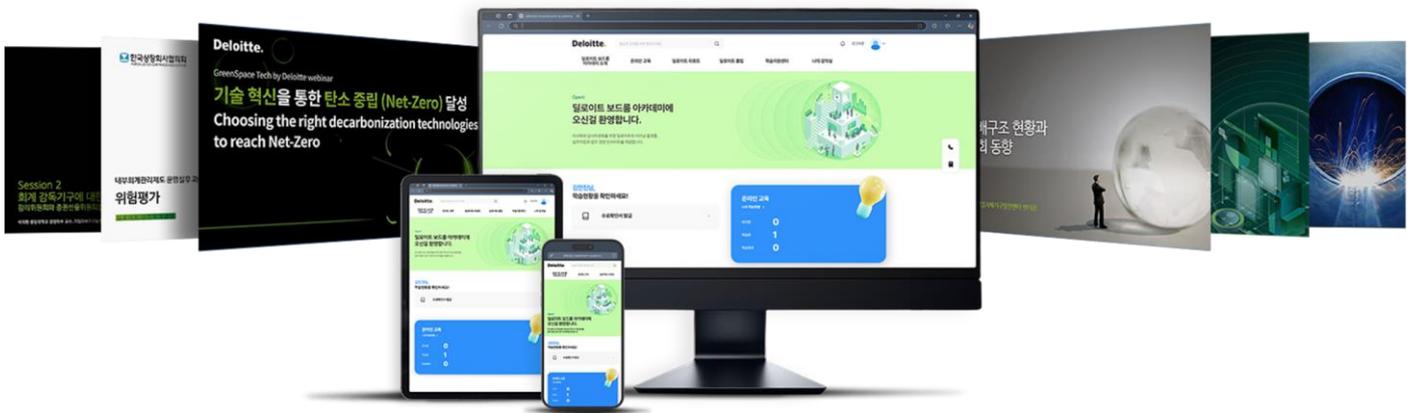
# VI. 주요 행사 ①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오픈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 및 감사님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딜로이트의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종합한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힘
- 플랫폼의 주요 콘텐츠는 '온라인 교육',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은 ▲이사회 프로그램 ▲감사위원회 프로그램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그램 ▲스페셜 아젠다 프로그램의 4개 영역으로, 직무별 학습 목적에 맞춰 제작된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 제공됨
-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공시, ESG, AI 등 현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딜로이트 및 외부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반영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임
-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공시를 위한 교육 수수료 확인서도 발급 가능함

## VI. 주요 행사 ②

### 2025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회계학회 공동 세미나 성료

※ 세미나 다시보기 영상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 센터 홈페이지(메뉴 ▶ Learning&Seminars),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 세미나 개요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 감사위원 · 감사 · C레벨 등
- **일시** 2025년 5월 9일(금) 14:00 ~ 16:40
- **장소**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at IFC (3F)

#### Agenda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국내외 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14:00 ~ 14:05	Opening Remarks I	김갑순 회장 한국회계학회
14:05 ~ 14:10	Opening Remarks II	장수재 대표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14:10 ~ 14:40	I. Keynote Speech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조동철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14:40 ~ 15:00	II.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연관성 및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주요 동향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15:00 ~ 15:20	Break Time & Networking	
15:20 ~ 15:50	III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	손혁 위원장&교수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개선위원회 &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15:50 ~ 16:10	III -2. 자금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내부통제 강화 전략	이승영 리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16:10 ~ 16:40	IV. 최근 상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장정애 자문위원 & 교수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6:40 ~	Closing Remarks & Wrap-up	

-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와 함께 지난 9일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에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힘
- 급변하는 거버넌스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이 공유됐으며, 참가자들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Opening Remarks I

## 김갑순 | 한국회계학회 회장

-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계 전문성과 경영 책임의 연계를 조망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금번 세미나가 실무와 학계를 잇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Opening Remarks II

## 장수재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

- 공동 세미나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감사기구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실무지침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Session I . Keynote Speech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 조동철 |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경기 흐름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으며, 특히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경직성과 같은 구조적 과제를 짚고 중장기적 경제 도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함

## Session II .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연관성 및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주요 동향

## 김한석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기업지배구조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이사회 주요 동향·감사위원회의 중점 과제를 소개함
- 견고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최고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함

## Session III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

## 손혁 |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 &amp;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전문성이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함

## Session III -2. 자금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내부통제 강화 전략

## 이승영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리더

- 그룹사의 자금사고위험 평가 사례와 자금흐름과 회계흐름 대사와 관련된 인공지능(AI) 기반 데모도 함께 선보이며, 자금 및 회계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과 이상징후 탐지를 통해, 실제로 기업 자금 흐름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최신 AI 기술의 적용 사례를 소개함

## Session IV. 최근 상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 장정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amp;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설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mailto:hansukim@deloitte.com)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mailto: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Strategy, Risk & Transactions  
✉ [hbkim@deloitte.com](mailto: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mailto: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mailto: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